

第265回國會  
(臨時會)

#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7年2月22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업무보고(계속)  
가. 노동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賃金債權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4. 敎員의 勞動組合設立 및 운영 등에 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5.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 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高齡者 雇傭 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賃金債權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
  20.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3. 社內勤勞福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
  2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27.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
  28.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
  30. 塵肺의 豫防과 塵肺勤勞者의 보호 등에 관한 法律 전부개정법률안

## 審査된案件

1. 업무보고(계속) .....	3
가. 노동부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 · 주승용 · 박상돈 · 김명자 · 김형주 · 조정식 · 이목희 · 김영주 · 김태년 · 세종길 · 한광원 · 김효석 · 최철국 · 윤두환 · 김혁규 · 김선미 · 임종석 의원 발의) .....	51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 · 이원복 · 김명주 · 이성구 · 신상진 · 이해봉 · 이인기 · 정성호 · 김태환 ·곽성문 · 이경재 · 이성권 · 고조홍 · 배일도 · 김정권 의원 발의) .....	51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김정훈 · 유승민 · 이성권 · 최경환 · 권철현 · 엄호성 · 김양수 · 이명규 · 박형준 의원 발의) .....	51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 · 최성 · 강창일 · 김춘진 · 우제항 · 강길부 · 양형일 · 강혜숙 · 장향숙 · 윤원호 · 김태년 의원 발의) .....	51
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 · 강기정 · 김영주 · 김재홍 · 김종률 · 김태년 · 김희정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서갑원 · 안병엽 · 염동연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이광철 · 이성권 · 이원영 · 이인영 · 장복심 · 정동채 · 정성호 · 조정식 의원 발의) .....	51
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김정훈 · 유승민 · 이성권 · 최경환 · 권철현 · 김양수 · 이명규 · 박형준 · 조성래 의원 발의) .....	51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 · 강기정 · 김영주 · 김재홍 · 김종률 · 김정권 · 김태년 · 김희정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서갑원 · 심재덕 · 안병엽 · 염동연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이광철 · 이성권 · 이영호 · 이원영 · 이인영 · 장복심 · 정동채 · 조정식 의원 발의) .....	51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 · 조성래 · 이성권 · 박세환 · 이은영 · 이계진 · 황우여 · 이인기 · 권철현 · 박찬숙 의원 발의) .....	51
10. 賃金債權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이성권 · 신상진 · 권철현 · 이명규 · 김정훈 · 유승민 · 최경환 · 송영선 · 엄호성 의원 발의) .....	53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이성권 · 박형준 · 신상진 · 권철현 · 이명규 · 김정훈 · 유승민 · 최경환 · 엄호성 의원 발의) .....	53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 · 곽성문 · 엄호성 · 이인제 · 박세환 · 이상배 · 고흥길 · 주호영 · 김무성 · 정중복 · 김용갑 · 김석준 · 정희수 · 심재덕 · 이한구 의원 발의) .....	53
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최용규 · 세종길 · 김영주 · 우원식 · 김종률 · 이강래 · 조성래 · 강봉균 · 이영호 · 박기춘 · 주승용 · 조일현 · 양승조 · 강기정 · 이상민 · 오영식 · 선병렬 · 노웅래 · 최성 · 김현미 · 정성호 · 김선미 · 김춘진 · 오제세 · 박명광 · 박영선 · 정덕구 · 문병호 · 우제창 · 정청래 · 윤호중 · 김성곤 · 신기남 · 조배숙 · 장향숙 · 김태홍 · 장복심 · 김낙순 · 우윤근 · 이은영 · 민병두 · 이기우 · 한병도 · 정장선 · 김교홍 · 이미경 · 조정식 · 김형주 · 문학진 · 장영달 · 윤원호 · 홍창선 · 전병헌 · 서혜석 · 유재건 · 이상경 · 송영길 의원 발의) .....	53
14.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이명규 · 김정훈 · 엄호성 · 김충환 · 이성권 · 정두연 · 유승민 · 김양수 · 김영선 의원 발의) .....	53
15.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 · 최성 · 강창일 · 김춘진 · 우제항 · 강길부 · 단병호 · 양형일 · 강혜숙 · 장향숙 · 윤원호 · 김태년 의원 발의) .....	53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 · 김동철 · 이종걸 · 조정태 · 배기선 · 정성호 · 박영선 · 이성권 · 김희정 · 노웅래 · 김재윤 의원 발의) .....	53
17.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 · 이성권 · 김희정 · 박형준 · 권철현 · 남경필 · 김명주 · 이주호 · 한선교 · 최구식 의원 발의) .....	54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 발의)(박재완·신상진·임태희·유기준·나경원·이주호·김성조·문희·이종구·심재철 의원 발의) .....	54
19. 賃金債權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20.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388) .....	57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	57
23. 社內勤勞福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2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963) .....	57
26.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27.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28.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30.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の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10시20분 개의)

○**위원장 홍준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 상정할 것이 29건이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하고 오후 일부에는 노동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계속)

### 가. 노동부

○**위원장 홍준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건은 먼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금년도 노동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노동부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선 2년간 논란이 지속되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정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노동부는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함께 가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다섯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 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청년·고령자 등 수요자별로 특화된 고용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과 3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차별시정 업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망 등 재해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가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입법된 노사관계선진화법의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노동행정 종합 컨설팅 등 각종 사업

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노동부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사발령으로 일부 국장과 청장의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 김성중 차관입니다.
-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입니다.
- 정종수 고용정책본부장입니다.
- 송봉근 노사정책국장입니다.
-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입니다.
-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입니다.
- 이성기 국제협력국장직무대리입니다.
- 이기권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 권영순 노동보험심의관직무대리입니다.
- 이채필 직업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입니다.
- 김성광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 허원용 홍보관리관입니다.
- 이우룡 재정기획관입니다.
- 김윤배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실무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노사정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 각 지방노동청장도 참석하였습니다.
- 조정호 서울지방노동청장입니다.
- 조주현 부산지방노동청장입니다.
- 정철균 대구지방노동청장입니다.
- 박종철 경인지방노동청장입니다.
- 박승태 광주지방노동청장입니다.
- 김맹룡 대전지방노동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입니다.
-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용달 이사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김동희 경영전략본부장이 출석하였습니다.
-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입니다.

-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장입니다.
- 최병훈 산재관리의료원 이사장입니다.
- 박용웅 학교법인 기능대학 이사장입니다.
-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유인물 죽 읽지 말고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세요.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알겠습니다.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금년도 입법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환율 하락 등의 여건으로 작년 5%보다는 다소 낮은 4.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둔화됨에 따라서 금년도 고용상황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률은 3.5%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자리 창출은 30만 명 내외로 전망이 됩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간의 불합리한 행태와 무리한 투쟁에 대한 비판 여론 등으로 관행의 합리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별교섭, 비정규직 보호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불안요인은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설립 등 정책 참여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법·제도 정착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갈등 발생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조법상의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을 둘러싼 쟁점이 있고 비정규직 보호법 하위 법령 제·개정과 특고근로자에 대한 2차 대책 수립과정에서의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사회 통합적 노동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주40시간제, 퇴직연금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을 도입하였고 노사관계 선진화법, 비정규직 보호법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와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온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책을 내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 과제의 경우에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노동정책의 비전은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함께 가는 사회’로 삼았습니다.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역점 추진코자 합니다. ‘더 많은 고용기회 제공’, ‘평생직업능력 개발기회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정착’이 그것입니다.

(홍준표 위원장, 우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많은 고용기회 제공입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확대하되 그간 정부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던 공익형 사업은 폐지하고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참여 기관의 경영능력 향상, 운영의 자율성 확대,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련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인증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그동안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제도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해서 직업훈련, 사회적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계하겠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허브로 해서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국가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과 복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고용정보망과 조직에 대한 운영 혁신, 센터의 자체 청사 확보 등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산업·경제정책의 연계하고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고용심의회 중심으로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서 지역 노동시장에 맞는 고용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기능 강화입니다.

기업의 재고용과 이직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 그리고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고,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 규모를 설정하고 보험요율과의 연계, 그리고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요자별로 특화된 고용촉진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입니다.

직업의식 확립, 직업 탐색기간 단축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단계별로 직업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사업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해외취업연수제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입니다.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수립,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홍보 강화 등 실질적 고용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확대 등 육아휴직 활용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경력단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도입 등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

지해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개선, 무료 컨설팅 제공 등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도모하면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한 정년연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그리고 ‘워킹60+’ 등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는 등 고령자 고용여건 조성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현황 공표 등을 통해서 정부 부문의 고용확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증진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모델 발굴을 위해서 가칭 ‘해바라기 마을’ 설립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선정·지원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제3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외국인력 활용 부분입니다.

송출 후보국가 추가 선정, 대행기관 업무 조정, 한국어시험 일원화 등 고용허가제 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별 송출 절차 상시 모니터링 등 송출 비리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통역요원 배치, 송출 국가 전자사증제도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직업능력 파트입니다.

다양한 양질의 훈련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 고용심의회 등을 통해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산업별 협의체에 인력 양성 기능 외에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참여 등의 기능을 보장하겠습니다. 또 지역 전략사업의 수요인력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 공모를 시범 실시하고 훈련 유형별 평가기준 특화, 평가대상 확대 등 민간 훈련기관에 대한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훈련기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훈련·자격 인프라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화사업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장을 확대하고 핵심 직무 능력 향상 훈련분야를 확충하고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강지원금, 학자금 저리 대부와 무상 지원 등 근로자의 자율적인 능력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범 실시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단기과정을 확대하고 훈련과정 다양화, 또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거나 선호하는 직종에 대한 e-러닝 콘텐츠 개발·보급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 훈련기관별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을 조정할 계획이고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기능 중시 풍토 확산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위해서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 종목과 등급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자격과 교육훈련 그리고 일자리 간의 연계성 평가 등을 통한 자격의 효용성도 제고하고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격관리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 시정입니다.

작년도에 마련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되, 파견업무 조정 등 노사 간 견해차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불명확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보완하고 기업 스스로 불법 여부를 진단·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차별 시정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고 차별 시정 담당에 대한 조직과 인력 확보 등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과 여러 가지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수립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당초 일정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조직은 행자부에,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보내서 두 달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행자부, 기획예산처 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협의가 진행되고 나면 5월 중에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마무리 협의를 하고 확정하여 6월 이후부터 부처 단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대책의 추진현황은 16쪽 하단에 있습니다. 마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입니다.

작년 10월에 만든 1차 보호대책을 내실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 관련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5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취약분야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파견법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총 1만 8470개소를 점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있어서 불법 하도급과 관련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 부과 등 취약분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체당금 지급 상한액 인상, 퇴직연금 도입 우수사례 전파

등 퇴직연금도입 촉진,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민간복지시설이용 비용지원사업, 그다음에 생계비에 대한 저리 융자사업, 신용보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도 시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먼저 재해감소를 위해서 산재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외국인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특성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고용증대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클린사업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서 재정·기술지원 사업은 물론 모기업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기술지원 유도 및 도급 사업주의 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사망재해 예방활동과 대형사고 대응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망재해발생 사업장 명단공표, 일일사망재해 현황 전광판 홍보 등 노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험기계·설비나 방호장치에 대해서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통단계가 아닌 제조단계에서부터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석면 가스켓 및 방직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나아가 대체화 정도를 고려해서 모든 석면제품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면 해체·제거기관 등록제 그리고 석면분석기관 지정제 등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석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개편하고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립하며 근골격계질환 등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교육을 복원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요양·재활·급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5개 분야 80개항에 이르는 제도개선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산재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단절차와 재해조사를 개선하고 상근자문의사를 확대하는 등 업무상 재해 판단의 신속·공정성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및 환자 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진료비 조기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재의료관리원의 재활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전문재활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재병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서 낙후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 현대화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재보험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노사관계의 정착입니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법·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하위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사갈등 관리를 위해서 노사관계의 취약업종·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노사갈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노사관계 취약업종 TF를 구성하고 취약사업장을 선정해서 전담근로감독관을 지정하는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인프라 확충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산별교섭절차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하청, 지역건설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구체화하고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고용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다단계 건설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문제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차원의 대화의 틀 마련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서 합리적인 원·하청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난 2월 6일 노동부와 행자부 간에 체결한 MOU에 따라서 각종 정책과 교육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노조법 하위법령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원식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사파트너십 형성 지원입니다.

작년 말에 개정된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라서 하위규정을 조기에 정비하고 의제별·업종별위원회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행정 종합컨설팅사업을 평가해서 보완하고 가칭 노사발전재단도 설립해서 교육·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그간 발전재단의 설립 추진 현황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적극적 노동외교 전개입니다.

한미, 한·캐나다 FTA 등 진행 중인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협상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ILO, 한국과 베트남, 한·몽골, 한일 노사정 교류 등 양자 또는 다자간의 국제협력사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중대산업사고의 예방에 관한 협약 등 2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기 비준 협약 체결된 것이 20개, 지금 3개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에 추가로 2개가 비준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OECD 회원국과 OECD 관계자에 대



한 이해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입법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해서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법률로는 9개, 건수로는 12건입니다. 고용보험법 3건이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정책 추진 관련 법안은 고용보험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3건이고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해서 4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을 한글화하고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한 5개의 법을 노동부 소관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것입니다.

노동부는 2월 이후에 추가로 산재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9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9개 법률은 산재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인노무사법, 보험료징수법, 근로기준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법률입니다.

32쪽에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9개 법률안에 대해서 요약해 봤고 33쪽에서는 연말까지 제출 예정 법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35쪽에는 작년에 통과된 노사관계선진화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 제·개정 추진상황 등을 시행령의 주요내용과 함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가만히 있어 봐요, 아직 들어가지 말고.

지난번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이후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해요? 그것 보고하셔야지. 장관께서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줘야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설사 파업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

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관해서 이미 현대차에서 고소를 해서 울산지청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저희의 강경한 입장만을 전달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불법파업이 종료하고 난 뒤에 검찰 수사 이외에는 노동부 차원의 할 일이 없습니까? 그것을 보고해 줘야지요. 마치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파업 이후에 노동부 차원에서는 할 일이 없다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따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지금 실무자들이 그것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게 연초에 일어났던 큰 사건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금년이 대선 해입니다—노동계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지 경제발전이나 나라 전체에 영향이 안 미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오후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마산을 한나라당 출신 안홍준 위원입니다.

장관님, 차관님, 간부님들, 구정 잘 쇠셨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감사합니다.

○안홍준 위원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의 핵심요소인 노동력이 투입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노동부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서 입직연령을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령을 늦추기 위해서는 임금유연성 확보 및 고용의 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및 의무화, 연령차별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증진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가능하면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안홍준 위원** 앞으로 고령자 취업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실업과 견줄 만하게 국가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9월 현재 사업장의 66.8%가 제도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1항에 국가·지자체 등 공공 부문은 우선고용직종의 인력채용 시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2항에 민간기업은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현재 공공부문 215개소 종사자 116만 명 중 준고령자 50세 이상은 21만여 명으로 18%의 고용률을 차지하고 있고 우선고용직종 종사자 14만 6000명 중 50세 이상은 3만 5000명으로 24.1%의 고용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채용 인원 3만 6000명 중 50세 이상 자는 8700여 명으로 24.3%의 평균 채용률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2004년 26.1%에 비해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헌법기관은 준고령자 채용이 1명도 없었으며 교육청은 채용률이 9.7%, 위탁기관은 10.9%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공공부문에서 준고령자 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고령자 채용 및 고용 유지를 강조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준고령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안홍준 위원** 아니, 그런 말씀보다도 제 질의는 공공부문에서도 제대로 채용을 안 하면서 민간부문에 고용 유지를 강조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공공부문이 결코 민간부문에 많이 떨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떨어진다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공부문에서도 제대로 채용을 못 하면서 민간부문에까지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 말씀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 노력해서 공공부문을 우선 끌어올리도록 힘쓰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노동부를 비롯한 10개 기관을 보면 2006년 1월 1일 현재 종사자 1만 6000여 명 중 50세 이상 자는 2000명으로 12.6%의 고용률을 차지해서 전체 기관 18%에 비해 5.4% 낮은 수준입니다. 우선고용직종 종사자 2000명 중 준고령자는 470명으로 23.5%의 고용률을 차지해서 전체 기관 24.1%에 비해 0.6% 낮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또한 2005년 한 해 동안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채용 인원 중 준고령자는 전체 기관 24.3%에 비해 무려 15.6%나 낮은 8.7%의 평균 채용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동부는 우선고용직종 채용 인원 중 50세 이상 자가 5.7%를 차지해서 정보통신부가 4.9%인데 이와 더불어 최하위 수준의 준고령자 채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솔선해서 우선고용직종에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고령자 고용정책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적하신 대로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2005년 준고령자 채용률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부를 제외한 산하

기관의 경우는 준고령자 채용률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노동부는 우선고용직종 중에서 민원상담원 환경미화원 사무보조원 등의 직종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는데 민원상담원과 환경미화원의 경우 준고령자 채용률이 각각 61%와 100%였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지원센터 등 지방 조직에서 다수 채용한 사무보조원의 경우가 준고령자 채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서 전체로 봐서는 준고령자 채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향후 지방 조직에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방침을 시달하는 등 신규인력 채용 시에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또한 2003년 6월 9일 제2003-7호가 마지막 우선고용직종 고시였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우선고용직종의 변경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리 부는 2003년도 고시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우선고용직종 재선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에 TF를 구성해서 우선고용직종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직무분석 및 수요조사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우선고용직종을 재선정 고시할 예정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장관께서는 우선고용직종을 비롯한 고령자 고용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더 크고요. 고령화 사회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충분한 영양 공급과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전반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출산 후 감당해야 할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관 인정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안홍준 위원**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는 설치의무 사업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하거나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561개 중 363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무 미이행률이 64.6%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알고 있습니다.

의무이행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낮아서 미이행 사업장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홍준 위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이행 사업장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과 미이행 사업장의 30% 정도가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의무 이행은 기업별 여건에 따라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지역별로 사업장 여건이 달라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율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말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 결과 미이행 사업장 중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장이 29.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행계획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그 사유를 보면 보육수요가 부족하고 또 설치환경이 부적절하고, 건물부지 확보 곤란 등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있으나 의무위반 시 벌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수요 부족 또 재정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므로 이런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좀 가혹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제도를

인식시키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흥준 위원** 본 위원도 의무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주에 의한 보육수당 지급도 현재 의무이행에 해당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수당의 일부 내지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제도가 있고요. 의무이행방법의 하나인 보육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육수당을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선 지원의 효과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준 위원** 두 번째로 영세 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단위보다 지역단위의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흥준 위원** 세 번째로 여성의 영유아 보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과 인적 자본 부식이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노동부 차원에서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실패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동감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준 위원** 마지막으로 보육 관련 사업은 고용촉진사업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으로까지 확대해서 고용안정계정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행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흥준 위원** 산업재해 미보고로 인해서 산업재해 통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인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나아가 제 근로자 보호정책의 신뢰성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점으로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인

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손실 또한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별도로 돈을 들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공상으로 치료하는데 따른 병원비와 합의금 등 추가적인 경제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천기업의 횡포로 인한 하도급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을 상회할 경우 관급공사 낙찰에서 결정적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원천기업은 도급계약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청기업에 산재 발생 미보고를 강요하고 또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원청자에 의한 공상 처리 강요는 2000년 29.2%에서 2001년 25.4%, 2002년 28.7%, 2003년 34.7%, 2004년 37.5%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증가의 경우 2000년 8.5%에서 2002년 9.5%, 2004년 11.6%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로 인한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왜곡된 통계에 따른 정책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와 노동부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간 산재 발생 미보고를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산재 발생 미보고의 주원인이었던 건설업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를 개선했고요. 재해율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감점제도를 폐지하였고, 산재 발생 미보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재 발생 미보고 시에는 미보고 1건당 감점토록 했고, 또 산재 발생 미보고 사례 적발 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재해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119응급구조단 이외에 민간 응급구조단의 출동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표본조사 해서 산재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또 이 조사결과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실 때 뒤에서 써 준 것만 읽지 말고 장관님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다음은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병호 위원** 단병호입니다.

우선 포항건설노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가 포항건설노조와 관련해서 노사분규 특별조사 및 예방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거기 보면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불법적 대체근로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

○**단병호 위원** 불법적인 대체근로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청장이 와 있는데 답변을 더 상세히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단병호 위원** 어쨌든 불법 대체근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결론이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사에 사용했던 자료, 그러니까 고용보험 신규등록자와 통근버스 탑승자 그리고 포스코 신규출입증 발급자 등 사용했던 자료 일체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것은 되겠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검토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대구 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포항건설노조 불법파업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알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이것도 얘기할 것이 참 많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잠정합의한 찬반투표 부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할 것을 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지요? 공식적으로 보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청받은 적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파업 중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법리적 논쟁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어쨌든 검찰이 노동부에 요청한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찬반투표의 부결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월권행위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보고문건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검찰의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단병호 위원**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보고서를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또 거기 보면 일용직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동부소관이 아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실무국장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부에는 직접 보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병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서에 이렇게 했고, 실업급여 문제는 얘기를 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리 부는 받지 못했고요. 우리가 보지 않은 문건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다른 부처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같은 행정부처 내에서 타 부처의 이런 행위를 월권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하게 월권적 행위 아닙니까? 노동부 소관을 검찰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나중에 따로 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참사 문제 말입

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이후에 노동부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23개 외국인수용시설에 있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체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해서 직접 근로감독관을 보호소에 보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하는 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계좌번호도 알아 놓아서 나중에라도 보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근본적으로 체당금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체불임금을 대신 많이 갚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40억 중에서 35억 정도는 갚아 준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현재 23개 외국인수용시설에 있는 체불임금 현황에 대해 노동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노동부에 확인했습니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상담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화성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청에 상담문의를 요청해서 수원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상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수용소에 수용된 노동자들이 고충상담을 요구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체불임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체불임금 문제를 누가 하느냐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상담해서 이 양반이 대충 사용자하고 알아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특히 어떤 사법권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특히나 불법체류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법무부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바로 노동부에 통보한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노동부가 고충상담을 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체불임금 때문에 해외적으로 국위가 손상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지금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차 고충상담을 해 가지고 체불임금 문제가 있으면 저희 지방청으로 통보해서 저희가 나가서 다시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그런 제도를 강화시켜서……

○**단병호 위원** 아예 시스템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알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아까 장관께서 체당금을 통해서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용주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입국조치가 되어도 사용주가 지불 안 하거나 했을 때 체당금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은 체당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차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려면 국내법하고 약간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법 개정문제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의 경우도 1336명에게 35억 6200만 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불법체류자들에게……

○**노동부장관 이상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불법체류로 되어 있던 사람들한테 한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것도 포함해서라고 생각됩니다.

○**단병호 위원** 외국인 근로자인데 합법체류자하고 관리사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불법체류자하고 구분이 될 것이거든요. 그 문제까지도 해당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건데요. 최저임금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감시·단속직도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보이는데, 법 개정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래저래 잡음이 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노동부에서도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갖고 근로감독을 좀더 강화하고 행정지도도 역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실태조사를 해서 홍보를 좀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 제가 근로감독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 3년간 감단승인사업장이 1만 2178개나 됩니다. 그런데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불과 673건(5.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부당해고가 이루어지든 어떻게 하든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언론에 보도되어서 노동부에 확인하면 노동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관서 감독 역점 분야로 선정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꾸준히 지도 감독을 한다면 좋은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강화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문제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노동부 대전지청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실제 감원인원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과도하게 해고자가 발생되고 이러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도 철저히 해서 올바르게 홍보가 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실제 그런가 싶어 가지고 아파트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서초동의—아파트단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경비원 1인당 135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돈을 가구당 부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나 하면 85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하면 전부 다 관리업체가 중간에서 가져가거든요. 이리다 보니까 실제 고용된 감시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은 적고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지도한다면 주민들의 부담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임금선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정책적으로 한번 행정지도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게 반려된 데 대해서는 고법에서 합법 노조로 판결이 났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노동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1심과 2심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대법원에 그 의견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냥 인정하면 안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는데 하급심과 고등법원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한번 상고해 보자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대법원까지 이렇게 상고심을 다루는 것은 모양이 참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요. 가능하면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이야기를 했는데 앓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에도 다 불법체류자든 어떤 노동자든 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산별에 그냥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다 조합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치 세계에도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노동부가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권 문제를 가지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5월 되면 시행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때는 확정돼 가지고 집행될 거 같습니다.

○**단병호 위원**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그 계획을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무소까지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인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각 부처로부터 그 계획이 거의 한 70% 이상 와서 지금 다시 2차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어쨌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진일보한 노동정책이라고 저희들도 평가를 합니다. 또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약해지 사태가 지금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지금 법원행정처 광명시 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은행 강원과학고 등등 해서 지금 수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칫 이렇게 가다가는 5월에 비정규직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실제 그 혜택을 봐야 될 상당한 분들은 계약 해지돼서 다 해고자 돼버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특히 노동부가 어차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

만큼 그 보호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됐거나 아니면 조기에 계약 해지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노동부가 앞장서서 중지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든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해서라도 5월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계약을 유지해서라도 5월 대책 이후에,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 문제를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고용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행정지침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이 만료돼서 해지된 사람도 있고 사전에 해지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비정규직들이 정부 대책 때문에 도리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가 그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미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시켰고요, 하여튼 5월까지의 일단 보류하라는 그런 통보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욱 더 유념해 가지고 대책을 더 강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다시 한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단 5월까지의 고용이 보장된 이후에 정부종합대책에 근거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러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상진 위원** 성남 중원 출신 신상진 위원입니다.

석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주무 부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어제 제가 환경부 질의 때도 석면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사실 해체나 철거작업에 있어서는 노동부가 주된 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노동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YTN에 보도된 것인데 석면해체 허가를 받고서 지하철 승강장의 냉방공사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보호장비 없이 해서 문제가 된 거



장관님 알고 계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 이후에 사법조치나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법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신상진 위원** 안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산업안전국장이 잘 알고 있는데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사법조치 결과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입니다.

금년 1월에 사법조치를 의뢰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상진 위원** 재판도 진행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처분이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할 일은 없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이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작업중지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좋습니다.

석면해체작업은 지하철 같은 데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요새 노후된 건물의 철거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이 많이 있고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데 과거 건물들에 석면이 80% 이상, 타일까지 모든 전자재에 쓰이는데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여태까지 아주 야만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동부 업무보고에도 전문가 육성이라든가 업체등록제로 한다거나 또 사전허가제에서 지방노동청의 허가를 사전에 받고 철거작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작년 6월 현재 사법조치한 경우가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석면제거작업이 서울시는 작년 같은 경우 실제로 이루어진

게 한 1500건 정도인데 적발 건수를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점검에서 불법적인 석면제거작업을 적발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작년에 우선 사법조치를 한 것이 총 44건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 포함해 가지고 44건을 사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 사법조치가 아니고 고발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고발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불시점검한 것은 작년도에 286개소 점검을 했고 217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와 사법적인 조치를 했고 실지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정확하게 44건입니다.

○**신상진 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결과는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신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해체작업을 할 때 전문업체들이 있기는 합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전문업체가 아직 등록업체는 없습니다마는 약 10개 정도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철거면허만 있으면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할 수 있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니까 누가 전문업체를 설립해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건이 안 돼 있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석면 관리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노동부 산하에 TF를 구성했어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금년 1월 26일 전문가 노사 시민단체 관련업계 등이 참석해 가지고 석면

관리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정부에도 지금 각 부처에 종합대책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거기 회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정부부처 간의 협의체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신상진 위원** 지금 학교 같은 시설, 프랑스의 제8대학인가 그런 데서는 교사들 12명이 석면에 노출되어서 폐암으로 발견되고 이런 사례도 있듯이, 또 석면의 문제는 즉각 어떤 질병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되고서 한 이삼십년 지난 후에, 그래서 그 위험성은 많이들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현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데는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노동부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앞으로의 계획은 좋지만 실제 그것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건교부·환경부·노동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면종합대책협의회, 거기 작년부터 지금까지 회의가 몇 번 됐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세 번 협의회 회의가 있었다는데, 벌써 이게 문제입니다. 정부 종합대책협의회라고 해서 작년 3월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몇 개의 부처가…… 환경부가 아무리 주관 부서라 하더라도 노동부 담당 부서에서 몇 번 했는지, 회의도 세 번이면 기억하기 어렵지 않을 텐데, 아니면 불참을 했거나…… 그러니까 소홀하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대처가 안일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우선 참석은 저희 팀장이 참석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부가 해야 될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노동부에서 생각할 점은 그 해체작업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만이 아니고…… 사실은 노동자에 대한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작업 보호구라든가 해체작업하는 노동자의 보호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해체작업이 규정대로 잘못되거나 했을 때 지하철을 타는 수많은 시민에게 분진 같은 것이 퍼져서 생기는 위험성…… 사실은 노동부에서 이 철거·제거 작업에 대한 사전 허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자의 안전만이 아니고 전 시민, 국민에 대한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거·해체 작업의 면허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노동부에서 구상하는 문제들이 절대로 그냥 소홀히 계획으로만 잡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안전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유념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체할 때 작업장 주변에 비닐막을 씌거나 그래서 타 공간으로 분진이 나가지 않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노동부에서…… 해체작업하는 데 불시점검하거나 이럴 때 작업하는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 면허제 도입을 할 겁니까,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면허제?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할 것인지 면허제로 할 것인지 TF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전문가들과 학계의 의견을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선진국들은 면허제도 도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꼭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다음에 작년 9월부터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거기에서 120개 기관 중에서 96개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일제점검이?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작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120개 기관 중 96개나 적발이 되어서 시정조치, 즉 업무정지라든가 지정취소가 됐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그간 저희 부처에서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 사무관이 작년도에 처음 특채되면서 의사들이 관정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 노동부가 실제로 정확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작년도에 처음……

○**신상진 위원** 의사 사무관을 작년에 했다는 게…… 원인을 거기에다 돌릴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는가라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그 원인 자체는 부산 인제대 백병원에서 특수검진 한 결과에 의한 판정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신상진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드러나 가지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뒷북치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런 특수건강검진 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것 아닙니까? 또 특히나 정부 산재의료관리원이 전국에 9개 있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신상진 위원** 그중에 7개가 또 거기에 적발되었어요, 정부 산하 의료원에서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데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요, 제대로.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서 일제점검에 들어간 거지요.

앞으로 근로자들의 특수건강검진, 이것이 사실은 검진항목에 대해서…… 과거에는 검진항목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추후 이번에 했을 때는 아마 검진항목을 여러 개로, 검진항목이 누락된 게 없느냐 등등서부터 좀더 자세히 한 것 같은데……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그렇습니

다.

○**신상진 위원** 그렇게 좀 강화해서 형식적인 검진에 끝나지 않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다음은 작년에 본 위원이 국감에서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전기건조기로 도장 건조를 하는데, 4500개가 있지요? 그런데 최근 5년간 7개 업체만 방폭 설치를 했던 것을 적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4500개 중에 450개가 전기건조기를 사용해요. 전기건조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열풍건조기는 석유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업체들에서 잘 쓰지 않고 전기건조기로 하는데, 방폭장치 인증을 받은 전기건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지요, 지금?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잘못된 인증기관 일 겁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러면 450개 업체인데 7개만 적발이 됐어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안전공단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중에 2개의 사업장과 또 연합회서, 세 군데서 민원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 민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소 이런 문제에 대해 지연된 사항은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전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해서 인정을 하신 건데……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도 이런 신문 하단광고에 방폭이 안 되어 있는 전기건조기 광고가 계속 버젓이 나와요. 그래서 ‘화재위험이 없다’, ‘짜다’ 이래 가지고 과대광고·허위광고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이게 올해 1월 25일에 나온 신문광고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조치해야 되잖아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신상진 위원** 이것 모르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 부스, 이것이 사실은 화재도 났었고 실제 그러한 폭발사고도 있었고 한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산업안전공단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그런 내역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방조치, 또 과대광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 차원인데……

원래는 이것을 적발하면 즉시 조치를 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즉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적발되면. 그런데 계도다 뭐다 해 가지고 자꾸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흥준**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보고에 5개 정책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설정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고용기회 제공’, ‘평생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향상’,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정착’ 이렇게 정책목표는 굉장히 뚜렷하고 잘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추구하는 정확한 큰 비전이나 골(goal)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더 많은 고용의 기회 제공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읽어 보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홍보 정도지 특별히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 사회에 있는 직업군의 구성을 사회적 일자리로 상당히 비중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분야에 2007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장관님께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 정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고용정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공포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각 지역의 지역고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해 주도록 이미 부탁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초치해 가지고 같이 많은 논의를 했고 그 성과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기업형·광역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면서 그런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도 아울러 취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사회적기업 수요가 있는 곳,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현장 수요자들한테는 그렇게 홍보된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물론 앞으로 금년에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 지방청을 통해서 실제 사회적일자리 수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조사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라든가 계획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전폭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참고로 말씀 올리는데, 좋은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요청하면 컨설팅을 해 주고, 나아가서 과거의 사례도 소개하고 해서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줄을 모르는 것이지요. 신청을 할 줄 알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한테는 그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을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홍보도 강화하고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비정규직 공공부문 종합대책에 대해서 사실은 단병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저의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분야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이어서 사회 다른 분야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안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책과정을 아예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 밑에 사업단을 꾸려서 사무소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원들이 차출되어서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집행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각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서 실행계획서를 다 보내와서 그것을 행사부·교육부·노동부 등 주무부처에서 다시금 심사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끝나면 아마 다시 또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는 차질 없도록 계획을 확정에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와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관련된 여러 기업, 공기업에 조사를 해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단위기업에서는. 5월까지 한 석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 번 더 산하 해당 단위 기업들과 현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논의하시길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 부처의 실무들을 초치해 가지고 교육·홍보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종길 위원** 저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아까 약간 얘기했었는데 분명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실제로는 금년 1월까지의 우선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재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자영업인과 근로자 사이에 특고라는 새로운 고용형태, 근로자형태를 만들어서 준근로자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외부 전문가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법안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 등 이해관계인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생각은 앞으로 한 달 내로는 확정을 해 가지고 입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생직업훈련개발 기회제공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실업자 훈련이 사실은 IMF 이후 대량 실업사태에 처한 실업자에 대한 훈련비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거의 10년 이상이 지나고 지금은 본연의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그런 대책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실제로 정확하게 기업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훈련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훈련을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가 2005년부터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역 실정을 고려해 청별로 훈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실업자 훈련 승인한 인원이 7만 3278명인데 금년 1월까지 취업에 성공한 것이 약 50%거든요. 그런데 취업자 중 41.5%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전체 훈련생의 약 20%만이 직장다운 직장에 취직했다, 안정된 취업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점이 저희가 보기에 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서비스업은 지금 이대로 가면, 가장 많은 취업자들이 몰리는데 대개 서비스업들은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업이 영세자영업이라서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훈련과정이나 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도 크게는 같은 생각입니다.

**○제종길 위원** 특히 자영업은 고용보험이 당연히 낮아져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신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수 건강검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진 위원께서는 그동안 단속이 부실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기관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건강검진 내용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지적된 비율이 굉장히 높는데 이것이 건강검진 하는 단체 간의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질이 떨어지고 또 굉장히 높은 단속률을 맞는 것은 아닌지……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간 전담의사분들이 판정한 부분에 대해서 거르는 작업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사실 그동안에 몇 가지 노동 쪽에 생긴 안전사고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건강검진 수입료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지나친 과다경쟁에 의해서 점점 더…… 한 번도 오르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이것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산업의학회라든지 학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도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친 경쟁이라든가 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의사들의 부실한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 건강검진시스템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노력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클린사업이 사전경영상태 평가 강화를 하는데 이게 영세사업장의 사업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없습니까,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지원 품목을 90종에서 160종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클린사업이 실제로 실시된 다음에 부도나 폐업된 상태가 있어서 노동부에서는 아마 사전경영상태 평가를 강화해 가지고 클린사업을 지정하는데 굉장히 강화를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클린사업자의 부도율이나 폐업 상태는 전체 제조업 부도·폐업률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강화하다 보면, 클린사업의 주목적이 영세사업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업장 지원이라는 클린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최소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이사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제로 사전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환경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전경영평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전경영성평가 강화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경영성평가 강화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겨서 영세사업장의 산업노동안전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 예,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노위 위원장하고 노사정 위원장한테 지금 물을 게 있습니까? 만약 중노위 위원장

이나 노사정 위원장에게 질의할 게 없으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 위원, 어떻습니까?

○**우원식 위원** 처음부터 하시지요.

○**위원장 홍준표** 처음부터는 그럴 수 없고…… 노사정 위원장님 어디 가셨나 본데, 그러면 오전 회의 마치고 중노위 위원장님하고 중노위 간부님들, 그리고 노사정 위원장님하고 노사정 간부님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나 공무원 모두가 노력을 참 많이 하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택 관련 대책만 해도 수십 번 발표를 하고 실업대책도 수십 번 발표를 하고 고용안정대책도 그동안 노동부가 발표한 것만도 수십 번입니다. 거기다 의료대책, 교육제도 관련 대책 등 계속 대책을 발표하는 것 보면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실제로 부산하게 움직이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런 노력과는 다르게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선 국민들이 느끼는 건 교육 불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불안, 현재 최저생계비 있지 않습니까? 최저생계비는 인간이 밥 세 끼 먹고 그냥 근근이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미만 숫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잘 모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최저생계비가 미달되어 국가가 지원하는 것만 140만 명입니다, 140만 명.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3280원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를 찾아서 제시해 봐야 숫자니까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건 정말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대책들이 국민이 보면 참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은 지금 당장 일자리 나갈 데도 없고 또 나가 봐야 겨우 한 30만 원, 40만 원 주는 데가 썩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많은 얘기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을 저는 정말 새롭게 각오를 해야 2007년도 금년이 끝나는 때에 그래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아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누가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배는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혹시 없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국민 세금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지금 국가는 그 부분에 가장 키를, 키라고 하기보다는 직접 주무부서가 여전히…… 임금근로자가 1500만이잖아요. 1500만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2500만 명, 이 땅이 4800만 명이니까요. 2500만 명이 바라보고 있는 데가 저는 노동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금근로자니까. 그래서 노동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복지부가, 아니면 교육부가, 다른 부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득이 있어야 집도 사고 소득이 있어야 교육도 받고 소득이 있어야 노후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는 한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어서 그런 각도에서 인권변호사이시고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는 시대여서 그것들이 굉장히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소득이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보장할까 어떻게 하면 안정을 보장할까, 소득이 있으면 안정이 보장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이 제기한 비정규직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노동부 산하기관부터, 시일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다 안 대겠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부터 지금까지 채용해 왔던 비정규직을, 이 부분이 사실상 노동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나 97년도 IMF라는 그것과 연이어서 정부의 규모와 재정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일시적인 사람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메워 갔었잖아요. 그

게 비정규직이 많아진 직접적 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을 진짜로 해결하려면 우선 산하기관부터 비정규직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고용을 좀 하라고 왜 지시를 못 내리십니까? 내리실 용의 있습니까? 다른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금년 5월에 그런 대책이 확정되고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에서……

○**배일도 위원** 그 이전에 잘라 버린다니까요. 지금 여기 제가 모아 놓은 자료만도 수도 없습니다. 노동부 산하기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얘기를 해도 신뢰를 안 가지겠습니까? 장관님이 작년에 발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잖아요.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우선 산하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산업인력공단 기능대 이런 데 있는 비정규직이 고용 안정에 두려움이 없도록 좀 보장해 주고요. 5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정말 불필요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막 잘려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만도, 법원행정처 광명시 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은행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데서 다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강국 현재소장한테도 법원행정처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침에 의해서 다 자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2년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려면 몇 시간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은행 같은 데는 어차피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잘라야 되니까 지금 직군을 새로 설정해 가지고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은 새로 설정하는, 이렇게 가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단순 반복 업무가 계속되는 데는 계속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 취지가 원래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니까 그 법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우선 노동부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부터 확실

하게, 5월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고용을 연장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채용하다가, 능력에 의해서 선별하는 것이야 어느 사회에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좀 듣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노동부는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지적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보고서 12~14쪽 평생직업능력 개발기회 제공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이런 측면은 아주 주요한 의제이고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군데—산업인력공단, 기능대, 기술대학교—여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인력들을 길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루느냐 하면 사람이 이루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배일도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인원이란 좀 제대로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기관보다도 사기가 진작되도록…… 여타 기관을 모자라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라는 게 아니고 지난번 공공훈련 인프라 재구축할 때 약속했던 그런 보수 수준이라도 맞춰 줘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일부는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현 정원이 1091명이에요. 이것도 공공훈련 인프라 재구축 때 해 가지고 승인까지 다 난 거예요. 승인부서가 노동부이기 때문에 승인을 내준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991명입니다. 100명이 부족한 상태로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기능대학은 186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은 140명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은 비정규직 대책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비정규직 숫자하고 엇비슷한데 비정규직을 빼더라도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런 내용들이 채워지려면 사람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된 인력, 제대로 된 대우, 그리고 나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것을 감독해서 징계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같이 구비될 때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현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게 지난번 공공훈련 인프라 재구축 때 설정된 인원이어서 비정규직 가지고 채우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대책이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대우와 적정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최소 인력이라고 해서 그때……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점까지 파악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1쪽에 있는 합리적 외국인력 활용제도와 관련된 건데요.

얼마 전에 여수에서 참사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여기에 가서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들인데 체불임금 때문에 본국으로 못 돌아가는, 그런 사유가 있는 분들이 절대다수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노동부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이번에 여수 참사와 관련해서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수 참사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더라고요. 또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못 가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물론 체당금제도도 있지만 체당금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도, 법무부가 협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거기에 노동부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주기적으로 실태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노동부가 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특별점검 조사를 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국회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특별조사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현안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회 지적사항에는 들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처리지침에는 들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안 들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혐의 없음’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혐의가 없을지라도 내용적으로는 혐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올리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교수노조 있지 않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노조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해당 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준비 정도는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 송봉근입니다.

교수노동조합은 현재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안 받고 있고……

○**배일도 위원** 초·중등 교원으로만 한정했으니까 그렇지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지금 노동3권이 허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수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교원의 노동3권 인정과 같이 국민여론을 좀 보면서 인정하는 상황으로…… 왜냐하면 교수 분들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면서 노동3권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니다.

○**배일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예.

○**배일도 위원** 좋습니다. 권리가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러는 것인지 몰랐는데, 여론의 문제는 아니고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인데, 헌법에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무원도 먼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만을 교직원노동조합에 넣다 보니까 자기들도 교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주되 그러면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노동3권 속에서 어떻게 제약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가져가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님한테 오후에 또 물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초라서 일도 바쁠 텐데 박은수 이사장도 퇴근하십시오.

중노위 위원장님하고 노사정위 위원장님도 점심 식사시간이니까 밥 먹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장관님한테 오후에 보고해 달라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오늘 국회가 금년도 노동정책의 방향에 관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후속조치에 관한 문제는 노동부나 이 정부의 금년도 노동정책 방향을 소위 예시해 주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또 빠진 것이 금년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됐는데 실제로 산업인력공단 인력만으로 정말로 컨트롤이 가능하나 그런 문제가…… 태국에 가 보니까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주재국에서 인력 송출하는 그 업무가 정말 가능하나,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노동정책이 새로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후에 현대자동차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문에 죽 나와 있는데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작년에 3년 유

예되었는데 금년도에 노동부 차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 그 사이에 5년 동안 노동부 차원에서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 유예기간을 둔 것이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까 금년도에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파업 종료 후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어 산업인력공단의 그분들만으로 진짜하기 힘든데 인력 증원을 해서 해야 될지, 어떻게 국제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해야 될지 이 문제하고,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3년 유예되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후에 업무보고를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준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기 전에 홍보관리본부장께서 주요 현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업과 관련한 노사관계 안정 대책 그리고 고용허가제 일원화와 관련한 원활한 외국인력 도입 방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관련 후속 논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이후의 노사관계 발전 대책입니다.

그간의 경위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분규 과정에서의 조치사항은 1월 11일 울산지청에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 바 있고 1월 15일 장관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불법파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불법파업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15일 부산청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1월 17일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조치사항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로 검·경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이, 노조부위원장 등 또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되었지만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2월 15일 사무국장 하영철만 체포되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6명 중에서 구속돼 있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우리 부는 노조의 사측에 대한 단체협약 위반 등 여러 건의 고소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고 수사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검·경이 수사하고 있고 저희들은 노동관계법 위반의 경우만 수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지대책입니다.

먼저 노사분규 취약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입니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집중 지도해서 불법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노동관서 노동부 본부 범정부 간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형 노사분규가 나면 특별대책반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사전·사후 조정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포함된 대규모 금속노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속노조 등의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합리적인 교섭질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과 원칙에 의한 불법파업 대응입니다.

2004년 6월에 범정부적으로 분규유형별 대처방향이냐고 하는 지침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검·경과 함께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점거 등 수단상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서는 사전 경고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를 하고 주동자는 물론 행위자도 엄정 조치한다, 두 번째로 목적·절차상의 불법인 경우—수단상의 불법이 없고—에는 노조에 대해서 불법임을 사전 경고하고 주동자 위주로 반드시 의법 조치한다, 세 번째로는 불법파업이지만 임금체불이나 부당 노동행위 등 그 원인 제공이 사측에 있는 경우에는 노는 물론이고 사 측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일관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 위반 정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 독자적으로 범죄 인지한 후에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합리한 대기업 노사관행 개선 추진입니다.

구조적인 노사갈등 원인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임단협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반해서 지급되는 격려금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동연구원 내에 있는 뉴패러다임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노사 각 5명씩 추천된 외부 노사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불법분규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이나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포하고 언론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에 원활한 외국인력 도입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면 이 수급계획은 조금 전 2시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확정된 금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입할 총 규모는 10만 96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고용허가제가 4만 9600명, 동포에 대한 특례고용허가제가 6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출국가 추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산업연수생 송출국가가 총 18개국이었습니다. 그중에 10개국

은 이미 외국인력고용허가제하에서의 송출국가로 선정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2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등 5개국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외국동포방문취업제는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우선 지금까지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연고 동포 외에 추가로 무연고 동포 3만 명 등 총 6만 명 규모로 도입키로 그렇게 잠정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동포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32개 업종 등에 취업을 허용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등을 통해서 제한 없이 사업장과 업종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외국인력 도입 과정의 원활화 방안입니다.

먼저 입국 과정입니다.

문제점은 민간단체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시험과 관련해서 응시원서 제출 과정, 응시인원 결정 또는 실제로 시험 실시 과정에서의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송출기관에서 구직자 명단 작성 과정에서 비리 가능성이 있고 또 입국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알선자들의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은 한국어시험을 먼저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제와 시험관리로 구분해서 출제는 한글학회 등 출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고 현지에서의 시험관리는 시험관리에 경험이 많은 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원서접수, 구직자 명부 작성, 비자 발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비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송출국가와의 업무협의를 강화해서 신속하게 입국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력공단의 각 국가별로 나가 있는 상주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출국가와 해외동포 인력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에 노동부의 노무관 파견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국 후에 외국인력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고용허가제 일원화 또 무연고 동포까지 방문취업제의 시행 등으로 국내에서의 관리 강화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14만 7000명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3만 명으로, 내년에는 40만 명

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 송출국가의 노무관들, 인력공단의 지사들, 여러 NGO 등 여러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취업교육, 애로 및 갈등 조정, 고충상담, 언어 지원, 사업장 변경,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등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공단과 노동부의 일부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된 후속 논의 추진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 11일 노사정 합의로 제한규정의 시행이 2009년 12월 말까지 유예되는, 노동조합법 부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시행에 대비해서 지금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논의해야 할 핵심사항은, 첫 번째는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계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창구 단일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반드시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어야만 복수노조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임자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노동계는 급여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현행법대로 완전히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선 빠른 시간 내에 복수노조, 전임자 급여 제한 입법을 위한 일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정 공동으로 전임자와 노조제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정된 노사정위원회법 시행이 4월 27일입니다. 그 시행 즉시 노사정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논의 틀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내에 노사발전위원회라고 하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 틀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틀이 구성되면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여기에 장관께서 “현대자동차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강력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위원장 홍준표 지금 현대자동차 파업이 불법 파업은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불법파업이면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은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서 수사권이 있지요? 이 부분의 수사권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

○위원장 홍준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업에 대한 수사권은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부분은……

○위원장 홍준표 근로감독관…… 한번 말씀해 봐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 송봉근입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니까 그게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속합니까?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예,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현대자동차 불법파업에 대해서 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인지수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업무방해·폭력 고소사건 수사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이 권한이 있다면 인지수사한 일이 있습니까, 불법파업에 대해서?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그 부분은 부산청장이 여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준표 답변해 보세요.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부산지방노동청장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검찰에 맡기는 것은 고소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고소사건 처리를 하는 것이고, 노동부에서 만약 근로감독관이 인지수사 권한이 있다면 했느냐 이 말이에요.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왜 안 했어요?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지금 저희……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장관의 지시는 그냥 공수표에 불과한 것인가?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13건의 소위 고소·고발 사건을 계속 수사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게 검·경에서…… 하여튼 저희들 불법파업도 파업입니다마는 저쪽도 결국 전체 불법파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홍준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뭐 있어, 검찰·경찰만 존재하면 되지?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저희들은 주로 사업주……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라든지 이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법을 바꿉시다. 근로감독관 기능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한정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장관께서는 “엄격히 처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아무런 할 일도 안 하고 장관께서는 큰소리나 뽕 뽕 치고……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주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 홍준표 사업주를 통해서가 아니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만약 인지수사권이 없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업무방해·폭력 하는 것, 이것도 전부 고소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예.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불법파업이 있으면 즉시 인지수사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전부 눈치만 보고 앉았고 장관은 TV에 나와 가지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게 쇼하는 거지 뭐예요? 제대로 일은 하지 않고…… 노동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불법파업이 만연하고 횡행한 것입니다. 파업이 일어났을 때 노동부가 여태 인지수사한 일이 있어요?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

○**위원장 홍준표**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지. 그러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기능을 사용자의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만 수사하는 것으로 법을 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건도 안 했지요, 여태? 자기 권한이 있는데 노동부는 업포만 놓고 TV 나와서 장관이 회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밑에 전달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불법파업에 대해서 노동부의 직권 행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들어가세요.

장관님,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장관님이 현대자동차 사태 났을 때 즉각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발표가 이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국회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연초에, 대선이 있는 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노동운동의 방향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관님이 처음 나오셔서 가지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중 대처를 한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노동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재 검찰·경찰에서 구속수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노사관계를 다루는 부처로서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러니까 장관님,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근로감독관의 기능을 조정해야 됩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사법경찰관의 직무권한 중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만 한한다고 이 조항을 바꿔 줘야 됩니다.

엄연히 권한이 있는데 1건도 없잖아요! 불법파업에 대해서 노동부가 나서서 직권으로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까지 1건도 없는가?

○**위원장 홍준표** 인지수사한 게 있으면 내놔 봐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장 홍준표** 불법파업에 대해서 노동부가 인지수사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 송봉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불법파업이 되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법행위는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그동안 관행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동안의 관행이 아니고 검찰·경찰에서도 인지수사를 한 전례가 거의 없어요. 검찰·경찰에서도 거의 보면 고소·고발로 인해서 주로 수사를 합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나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가 자기 권한에 속한다면 왜 여태 단 1건도 그런 수사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파업이 횡행하고 만연하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불법파업을 해도 그게 죄가 되는 것으로 의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끝나고 난 뒤에 장관께서 “엄격히 책임 묻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하셨어요, 그때 우리 긴급 위원회 회의할 때. 그래서 과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형사 책임을 묻는 문제는 강력한 검찰이 지금 구속수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것이고요. 민사상으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갖다가 여기는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 조사 중이 아니고, 구속수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장은 지금 현대자동차 안 사무실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나오지를 않아서 경찰이 집행하러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소도인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지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판사가 지금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파업하고 난 뒤에, 각종 불법행위하고 난

뒤에 회사에서 안 나오고 회사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숙식하고 몇 달간 있으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그게 공권력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법 집행은 검찰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지요.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 검찰이 법 집행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여기서 다들 문제는 아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고유한 기능조차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검찰이 고소를 해서 이것 수사한 것 아닙니까? 노동부는 인지수사를 해야지요.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적법한 권한 행사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한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의 그 직무 범위, 거기에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연히 법에 권한이 있는데 행사하지도 않고 “엄정 대처하겠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하니 계속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법에 규정된 권한은 제대로 행사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홍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준표**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이것 보시고 추가질의하십시오.

○**우원식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오늘 주질의 하실 분이 또 한 두 분 있기 때문에…… 우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하고 있지요?

○**우원식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으로 수사 중에 있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 중인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검찰은 업무방해가 되는지 여부, 폭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파업의 절차상 문제가 위법인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건에 관해서 절차상 위법이 있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또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원식 위원**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따로

수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에는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우원식 위원** 과거에는 있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검찰 지휘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고 또 경찰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물론 수사 지휘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사를 하지만 보통 검찰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개입해 가지고 할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은 검찰 지휘와 별도의 수사를 하나요, 아니면 검찰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경우 보통 검찰이 특별하게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수사를 보조하는 그런 일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따로 수사한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은 검찰에도 저희들 취지를 전달하고 이번에는 강력하게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번 현대자동차 파업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검찰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될 것을 요구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노사의 건전한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테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근로감독관들이 보완해서 수사를 할 필요는 있을 테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따로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사권은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현대차의 불법과업에 대해서 이것이 온정주의에 흐른다가나 또는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다가나 그런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특히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잘 대처해 나가시고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게 처리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는 관행은 없애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잠시만요.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폭력행위하고 업무방해는 수사한 지 오래 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법과업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법과업에 한정해서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인지수사권이. 인지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불법과업이 발생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그것은 인지수사를 하고 했어야 옳는데…… 그러면 폭력행위하고 업무방해를 전부 검찰에 송치를 하면 병합해서 수사를 합니다. 병합을 해서 수사를 한다고. 그런데 여태 자기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행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해서 내가 이번에는 장관님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긴급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 가지고 그때 파업 끝나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장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노동부 차원에서는 소위 근로감독관들이 활동을 했느냐 이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지금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이 문제를 그런 기조로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 노동관계법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인지수사권이 있고 다 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해서 검찰의 지시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불법과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불법과업에 대해서는 여태 검찰이 나서서 일을 하든지, 그리고 작은 업체 같은 데는 사실상 타결이 되면 유야무야하고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 없이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불법과업의 예방적 효과를 나타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배일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너뛰어서 얘기가 진행되니까 저 같은 사람은 혼란스러운데요. 파업이 벌어지고 나면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양측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서 판결을 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보통 권리분쟁인 경우에 파업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업무방해가 되기 때문에 보통 경찰이 다루고요. 이익분쟁, 목적은 맞는데 절차를 위배한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수사해 가지고 나중에 병합처리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배일도 위원** 저희들이라는 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리 노동부요.

○**배일도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노동부장관 이상수**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하겠지요, 지방청에서.

○**배일도 위원** 그러면 행위가 벌어졌을 때 불법이다라고 국민한테든 당사자한테든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는 천명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천명했고……

○**배일도 위원** 그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직접 저희가 부산청장을 통해서도 노조에 얘기했고 울산구청장도 가서 얘기했고 여러 차례 파업을 철회하라고 얘기했었지요.

○**배일도 위원** 철회하라 마라 할 것도 없고요. 불법한 사람이 철회하란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이 ‘찔러 죽이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안 찌르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요. 절차적인 문제에서 흠결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되고요.

현재 불법인지 아닌지 어디에선가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듣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법이라고 봤으면 불법이라고 선언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TV에 나와서 ‘불법파업은 안 됩니다’ 파업을 하기 전에 또 파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불법인지 아닌지 판정도 않고 그다음부터 그냥…… 합법파업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법파업은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갈협박밖에 안 되는 거고 법 절차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조치만 취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아버리면 되는 거지 나와서 매번 하는 게 ‘법과 원칙을 지키



세요’ 그 애기와 ‘불법을 엄단하겠습니다’ 아니, 엄단하지 않는 것을…… 엄단은 필요 없어요. 그런 말도 필요 없고 절차대로 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에 항상 이와 같은 얘기가 계속되는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번 현대차 경우도 분명히 권리분쟁에 관해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불법파업이라고 단정을 내렸고요.

○**배일도 위원** 권리분쟁인지 규범적 효력인지 의무적 효력인지 어떻게 노동부에서 그것을 판정을 해 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상여금을 안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리분쟁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백하다, 불법이다라고 판정 내렸고요.

○**배일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다음에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수사원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 파업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현재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파업을 철회하면 수사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그러면 내일까지 하고 있는데 철회를 하면 수사를 안 들어가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철회해도 나중에 불법한 부분은 남겠지요.

○**배일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범집행상에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법이 특별법이고 그런 속에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에 현재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소독점권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바로 잡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아무리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명확히 실제 시물레이션을 해서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법 개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준표** 그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주요현안보고를 별도로 했기 때문

에 이 문제 포함해서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입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위원장과 배일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보고와 현대자동차 파업 사후조치를 보면서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넘어갔으니까 또 희미하게 넘어가 버려요. 사후에 정말 엄단하겠다, 이제 불법은 용인치 않겠다, 또 여기에 모든 언론과 국민들도 아주 이번에는 뭔가 끝장을 보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용두사미로 또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검찰에 맡겼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까 장관님 말씀만 들어 가지고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명치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파업을 철회했지만 불법파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그 후에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분쟁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관례상으로 봐서도 이익분쟁의 절차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노동부가 많이 수사를 했고, 권리분쟁으로서 업무방해 같은 것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앞으로 되겠지요. 저희들도 계속 강하게 추구도 하고 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왜 영장이 떨어진 위원장에 대해서도 현재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편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불법파업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해 업무방해·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 중,’ 그런데 ‘노조 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 노조 부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

으나 현재까지 미체포상태, 사무국장은 체포됐으나 구속되지 않음' 그러니까 이게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그냥 버려두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마 체포를 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희미하게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니까 하는 애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노동부로서도 정책수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정부를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노동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 부처 간의 협조도 한계가 있고 또 사실 법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할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차원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현대차 문제는 현대차라고 하는 큰 회사의 경쟁력이 바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문제는 또 한국 전체 노사문제하고도 직결되고 그것이 해외의 한국 투자 문제에도 직결되고 한국의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바로미터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하는 그 부분,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잡혀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장관께서 깊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노사 양측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추진하다가 관뒀는데요.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제 지나갔으니 그만두자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노동 쪽도 그렇지만 회사 측도 정말 악덕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슬그머니 후퇴하고 뒷돈 쥐 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런 식의 노사행태를 만든 그 근본 원인도 노 측뿐 아니라 사 측에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 정도 해 두고요. 다른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의 전주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주 사태는, 정말 이것은 하나의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 또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일자리창출이 이번에 전주공장의 경우는 700개나 생기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산업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꼼짝 못 하게 거부를 함으로써 회사 자체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또 일자리창출의 계기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 역시 노동부의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고 노사 간의 어떤 단체협약에 의해서 노조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배치를 하는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사가 원만히 협의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근로자의 노동3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근로의 권리, 일할 권리 말이지요. 협력업체나 일반 젊은이들 취업하는데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것도 큰 권리의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무언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대차 노사관계는 그동안 사 측이 많이 양보해 가지고 사실 단체협약이 노 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사 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단체협약의 일부를 좀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산별노조가 활성화되면 산별노조를 위해서라도 현대차 노조의 기득권을 좀 양보받는 그런 노력도 해 보겠다는 등 정말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정책수단을 강구해 보라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사내 하청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1월 초에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처리 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최근의 판결 경향은 현대미포조선 사건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에서 보듯이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서 사실관계뿐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의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노동부는 현재 고시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고시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판정 결과가 자주 뒤집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 나름대로 정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사건들이 가끔 검찰이나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도 하면서 실제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보기에, 현재 노동부의 기준이 고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고시는 실무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령도 아닌데 거기에 구속되지 않겠다, 구속되지 않겠다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시로 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 조금 상향조정해서 딱 박아서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고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원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주 좋은 제안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1차 법 집행기관인데 검찰과 우리 노동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과 조율해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준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상위 법령으로 규정해 가지고 좀 권위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다른 문제인데, 위원장께서 고용

허가제와 관련된 걱정을 하고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동남아 각국을 돌아보면서 고용허가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50%도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것에 의해서 잘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가벼운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 한글학회와 한국어세계화재단에 의해서 각각 3개국씩 6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서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시험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언제 할지도 모르고 연락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내내 언제 하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례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월 1일이면 10월 1일,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렇게 딱 확정을 지어 줘야 그분들이 준비하고 관리하는데 편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은 월별 고용허가서 발급 수하고 국내 유효구직자 수를 감안해 가지고 양국 간에 시험응시자 수, 시험일정에 대해서 합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은 특수 사정 때문에 연 1회 실시했고, 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은 연 2회 정도 시행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새롭게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고 개선하면서 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응시수수료가 잘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다 똑같이 미화 30달러인데, 스리랑카의 경우는 평균 월급의 3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한국에 올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격이고 여기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꼭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건데 수수료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도 그런 점에 관해서 문

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출 국가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한번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합격률 편차가 제 각 각 이에요. 몽골의 경우는 41%, 스리랑카의 경우는 63%, 또 합격률이 84%를 기록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32%를 기록한 시험도 있어요. 이것은 난이도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동부장관 이상수**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기권** 고용정책심의관 이기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출제를 한국어재단하고 한글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난이도의 조정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답 다 하신 거예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이기권** 예.

○**이경재 위원** 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그렇게 편차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각국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시험문제의 난이도에 편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걸 잘 조정해 가지고 그런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면 한국어의 세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프리카나 중동까지도 연장을 시키면 한국어 붐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또 PICKO, 산업인력공단이나 KOICA나 이런 데서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로 파견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국의 해외 송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노사발전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 문제…… 예산처에서는 50%밖에 안 대고 50%는 노사가 해야 한는데 노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발족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상 좀 말씀해 주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재 국제노동재단을 노사발전재단으로 바꾸어서 앞으로 노사협력사업

을 하겠다는 큰 입장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TF가 구성되어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노사발전재단의 밑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까지는 대충 재단의 내용이 확정되고 4월 초쯤 발족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22억 편성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인원을 증원하고 사무실도 구하는 일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단지 금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야 되는데 펀드 조성은 사 측이라든지 정부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금년만큼은 노동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의 일부를 주어서 노사발전재단이 우선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노동부에서는 한 60억 정도의 노동부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에 간접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정부의 출연금, 펀드 부분에 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무래도 노사협력사업은 노사 간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고용보험기금도 일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딱 1년 남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잘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진보 논쟁 그런 걸 하는 것을 보니까 민주노동당이나 손호철 교수나 이런 분들이 비정규직법안 만든 것을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것인양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좀 슬프기까지 했는데, 통과된 비정규직법이 그 이후에 실제로 비정규직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아까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공감하면서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관이나 총리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어젠다가 현실에 가면 다 비틀리고 꼼꼼하게 잘 안 되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대책만큼은 노동부에서, 이상수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겠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시정절차가 현장에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것은 명예근로감독관이라도 더 많이 확충하고, 하여튼 그 대책을 잘 세워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별시정에서부터 법이 시행되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소홀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회 구조, 일자리 구조를 바꿔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작년에 우리가 만든 사회적기업법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법과 관련해서 설명회를 겸한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잘 모르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좀 마음먹다가도 잘 못 덤벼드는 게 저것 했다가 구멍이 나서 계속 퍼붓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설명회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준비가 매우 꼼꼼하게 잘 되어야 하겠다…… 특히 컨설팅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과제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부터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 노동부에서 얼마 전에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초치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굴지의 모든 대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했는데 전부 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많은 건설적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자신들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약속도 얻어냈습니다.

**○우원식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만 꼭 큰 기업뿐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해 왔던 작은 규모의…… 사회적 기업이 큰 기업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사회적 기

업으로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해 오고 있던 시민단체나 아니면 지역에 밀착해 있는, 이를테면 성공회 나눔의집에서 해 왔던 사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설명도 잘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되어야 할 테니까 그런 점에서 실수가 없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우원식 위원** 현대자동차 문제는 역시 노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대목인데요. 저도 몇 년 동안 국정감사할 때마다 현대자동차를 증인으로 불러서 노사 간의 대타협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결국 대타협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텐데, 이게 처벌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동안 처벌이 부족해서 노동운동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과거에 공안정국을 통해서 엄청난 탄압 속에서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불신까지 만들어져 왔던 과정이 있는 건데, 따라서 결국은 자발적인 사회적 대타협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가려면 채적과 당근이 필요할 테고 결국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타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고용·실업 문제 이런 것일 텐데, 여기에 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요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이 복잡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놓칠 수 없는 문제여서 계속 토론회도 해 나가고 저 나름대로 대안도 준비해 가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지적해 볼까 합니다.

실업자 직업훈련 평가에서 취업률, 특히 동종직종에의 취업률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 취업률이 전체 평점에서 몇 점이나 되는지 아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16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90점 만점에 16점이거든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동종직종 취업률인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8%입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은 8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 봐야 17.8%입니다. 2004년에는 138점 만점

에 31점이었는데, 직업훈련기관 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이 평가기준에서 가장 중요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고 노동부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2004년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위원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취업률의 배점을 더 높이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결국은 취업률로 다 평가되는 거거든요. 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훈련실시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취업률이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보내온 적도 있는데 다른 것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영 다른 것 가르치고, 취업 안 되는 공부 가르치면 아무리 잘해 봐야 뭐 하겠어요. 결국 취업률을 높여야 할 텐데, 너무 배점이 낮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100점 만점에 지방노동관서 평가 배점 10점이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게 90점 있고요. 그런데 어떤 기관이 문제를 제기해서 봤더니 산업인력공단에서 평가한 기준에서는 1등을 했는데 지방관서에서는 꼴찌를 해요. 지방관서는 좀 다른 기준이 있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지방청 평가항목으로 훈련기관의 안정성에 대해서 2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과정의 건전성에 대해서 8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성 평가도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과정 훈련일정 변경, 교육과정 폐강 여부, 수립된 해당 과정 훈련계획과 실제 훈련일정과의 부합 정도, 해당 과정의 훈련자료로서의 출석부·훈련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되는데……

○**우원식 위원** 한번 살펴 보시라고요.

취업률에서도 1등이고 여러 가지가 다 1등이어서 1등을 했는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꼴찌예요. 그 기관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관서의 평가 배점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주관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0점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누차 하고 있고, 현장 맞춤형으로 하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 중심이라고 할 때 수요자가 누구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기관의 훈련이 잘됐는가 어땠는가를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데 평가위원들을 보니까, 2006년에 343명인데 전문훈련가 84명은 다 교육훈련기관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디 전문학교 이런 데 사람들이고요. 173명은 내용전문가라고 해서 다 교수들이고요. 그중에 기업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교수 자격으로 왔고, 노동지청 해 가지고 노동관서에 있는 사람들이 86명으로 기업에서, 수요자 쪽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수요자 중심 그리고 수요자한테 필요한 직업훈련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잘못됐다고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자료는 뭐냐 하면, 이것도 황당하더라고요.

직업훈련 수요조사에 따라서 무슨 훈련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건데, 여기 보이는 게 서울지방노동청입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어디냐 하면 서울 강남에서 영월까지 있어요. 수요조사를 하는데, 샘플링을 하는데 강남에서 54개를 조사했고 영월에서 57개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지방노동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부터 해서 춘천 태백 강릉 원주 영월 의정부까지 다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필요한 게, 예측되어진 게 전체 총원 예정인원 중에서 외부훈련 수료자의 총원 수요가 9810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서부터 영월까지 다 합치면 13개 직종에 9810명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방노동청에서 그것에 따라서 직업훈련기관의 직종승인비율을 내 줘요. 이것은 강남에서부터 영월 태백까지 다 합쳐 가지고, 강남에 54개 샘플이 있고 영월에 57개 샘플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직종을 다 나눈 겁니다. 강남지청에 저런 지침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영월 태백까지를 다 포함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직종을 퍼센티지로 구분해서

그 퍼센티지 가지고 강남지청 안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이렇게이렇게 훈련시키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월에 필요한 일을 강남에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 맞춤형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지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청별로 뭐뭐를 하라고 줘야 될 텐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다 통괄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통계를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

○우원식 위원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역별 인력이라든지 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청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세분화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 표본 추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당장 47개 지청 단위로 실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우원식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요. 직업훈련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고용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저는 직업훈련기관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특히나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업에 전혀 맞지 않는 직업훈련을 시키라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다른 데보다 이런 데 배정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복지 부분에,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에 예산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런 부분에서 잘 점검이 되지 않으면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하여튼 좀 고쳐 주시기 바라구요.

아파트 경비업무 산재요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당정협의 때도 좀 얘기가 되었는데 아파트 경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지요, 최저임금 도입하면서?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우원식 위원 올해 70%, 내년에 80% 최저임금 도입하니까 자꾸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총액은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산재요율을 적용할 때 경비원에 대한 산재요율을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분류해 가지고 1000분의 26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우원식 위원 그런데 아파트 경비는 경비 요율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 요율로 적용하면 6.4%인데 이것을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물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건물 종합관리다, 22.4%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게 행정심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행정심판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경비파견업일 때’, 조금 다른 것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요, ‘경비파견업은 건물 종합관리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도입하는 것 때문에 경비원들을 해고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2005년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경비 요율이 아니라 건물 종합관리 요율 22.4%로 적용하다 보니까 과거 3년치를 소급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억 정도 매출을 갖는 기업이 3년 것을 소급하려니까 1억 정도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자르는 쪽으로 가 버리는 것입니다. 경비 요율로 할 수 있는데, 아파트 경비는 경비하다가 분리수거 업무가 새로 생겨서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을 옆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건물 종합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종합관리 요율을 적용하고…… 노동부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것은 사람 자르는 쪽으로 다 하라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저희들도 경비업무가 정말 순수하게 경비업무만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도 포함돼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 있으신 것처럼 보다 세

심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경비 업무 쪽으로 요율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에 관해서 행정심판을 통해 명백하게 판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 종류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 사업장이’, 이게 경비에 관해서인데, ‘모든 사업을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단정하고 위 사업의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은 잘못됐다’,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판례에도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우원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 아파트 경비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 노동부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자고 하면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율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시정을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겠는데, 심판의 핵심적인 취지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별로 경비업무만 하는 것인지, 그 밖에 청소업무 등 아파트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경비원이 아이들 신변보호도 하거든요. 그러면 경호업도 됩니다. 경호업은 산재요율이 더 높아요,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판정을 해서 해야지 자꾸 산재보험을 많이 내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3년 것을 다 내야 되는데, 20억 매출에 1억씩 내야 되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지켜 주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우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 함께 가는 사회’라고 하는 비전하에서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시고, 특히 첫 번째에다가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세우신 데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지향하는 우리 장관님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영을 하고요.

특히 8페이지에 보면 ‘고용·산업·경제 정책을 연계한다’는 표현도 있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용·산업·경제 정책을 연계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개의 큰 장애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이 2개를 해결해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라 하고 하는 것은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다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고용·산업·경제 정책의 연계를 굳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국무위원으로서, 또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 경우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고, 노동부에서는 노사관계도 협력적인 관계로 끌어올리고, 그 밖에 다른 부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도 완화시켜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경제장관회의에 가끔 참석합니다. 참석하면 저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도 경우에 따라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도 한 바가 있고요. 저는 친환경적인 규제는 조심스럽게 풀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는 좀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고용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제조업의 공동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외국으로 나가 버리고…… 거기에는 그런 규제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경쟁



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대개 다 외국으로 나가 버리고 결국 제조업의 공동화가 오늘의 고용 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고용이 당장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해서 물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가지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은 기업들이 너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않고 쉽게 저임금에 의존해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외국에 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업 쪽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는 가격경쟁을 하기보다는 품질경쟁을 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바꿔 얘기하면 기술과 인적자원을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을 해 주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선문답같이 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동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리하고, 구조조정 이런 것에 아주 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컨대 은행을 다니시던 분들이 40대 초반에 실직을 당해서 할 수 있는 게 뭘니까? 치킨가게를 한다거나 식당을 한다거나 퇴직금 털어서 이런 것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로 다 전환이 됐는데, 그것도 그런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과당경쟁이 생겨서 안 되니까 심지어는 ‘지역별로 몇 개씩만 할 수 있게 이것을 규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사실 현상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험 없이 들어와서 망하는 가게가 하도 많으니까 ‘간판가게만 잘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일곱 집 중에서 두 집의 가장이 비고용 상태다 그런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도저히 나는 취업 못 하겠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지요. 은행 다니다 관두고 치킨집 하다 망해서 그다음에 갈 데가 없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일곱

집 중에 두 집의 가장이 비고용 상태다, 이것이 우리 사회 불건전성의 출발점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고용에 복귀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미스매치(mismatch)를 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부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은 해 보신 적이 있으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자영업이 외환위기 이후에 너무 과잉공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영업을 전직시키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한편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체의 훈련을 좀 강화시켜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이는 것, 외국의 서비스산업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 서비스산업과의 경쟁력 이런 것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의료가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이런 분야에서, 관광이 어떻고 하는 데서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쟁력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고 등이 되어서 영세 자영업으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은 있느냐 하는 질의를 먼저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나름대로 조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내용은 한번 우리……

**○정진섭 위원** 좋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어디에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자료로 내주시고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다시 고용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훈련과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전직훈련도 우리가 시키고 있고요.

**○정진섭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이렇게 한번 고용 불안의 큰 쓰나미가 오면 사회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이

미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또 한 번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FTA와 관련해서 올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 간에 있어서 어느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이…… 대개의 산업들이 쇠퇴하면서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태가 올 텐데, 그러면 이분들을 다른 산업 분야로 이전시키기 위한 준비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세우고 계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는 교육부와 같이 결합해 가지고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력 전망에 대해서 공급 쪽은 교육부가 맡고 수요 쪽은 우리 노동부 쪽에서 맡는 것으로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조절하고 미스매치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세우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미 우리가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논의해서 틀을 만들고 지금 현재 제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 진행과정을 역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최근에 취임식 후에 기자회견에 와 가지고 “노사분규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노사관계의 TF를 만들어서 노사문제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노동부장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노동부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산자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사관계를 끌어올리는 데는 노사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산자부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자부는 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설득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크게 봐서는 노동행정을 도와주는 것이고 함께 노력해 가지고 기업 환경을 잘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이런 입장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역시 통 큰 정치인 양반이라서 다르시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노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표도 새로 선출이 됐는데 계속 민주노총은 바깥에 두고 가실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지금 민주노총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물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교조부터 만나서 전교조 간부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민주노총에서 얼마 전에 면담을 하자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한번 대화를 깊이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정진섭 위원** 산자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노사정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노사정이 지금 그러지 못해서 심지어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알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뒤서는 안 될 거고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중도세력까지, 즉 노사정을 확대 재편해 가지고 노사정이 진짜 사회 타협을 이루는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을 노동부가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도 크게는 그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동부가 아까 말씀하신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간판적인 말씀이시고,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크게 산업 간의 문제가 생기는 미스매치들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생기는 노동문제들을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 노사문화를 바꾸는 거의 전기처럼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각오를 보이시다가 이렇게 확 물러나니까 저희들은 일종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노사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실 겁니

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사실 현대차가 보여준 당시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대차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노조와 사용자 측의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관계가 저희들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사 측이 노 측에 많은 양보를 해서 사실 현재 단체협약이 법 이상으로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진섭 위원** 현대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노사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쭙보는 거예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노사관계가 크게 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또 협력적인 관계로 저희들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와 의식을 다 바꿔나가겠지만 최근에도 선진화기법 등을 통해서 많은 제도가 바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의식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법과 원칙을 지키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오고 해서 국민의식도 고양되고 사실 노동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의식이 바뀌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신다는 의지를 밝히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 하신 지 얼마 되셨죠?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 1년 좀 넘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생각해 보셔서 ‘야, 이것은 내가 정말 잘 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부가 계속 계승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1년 동안 일하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미제들을 그나마 다 풀

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찾아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고용지원센터하고 직업훈련 부문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김원배 이사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얼마 전에 노조가 오랫동안 농성을 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예.

○**정진섭 위원** 내용이 뭘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징계규정 속에 해임규정하고 파면하고 정직 이렇게 징계 종류가 나열되어 있었는데 종전에 해임을 없애고 강등조항을 새로 신설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등이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노조에서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래서 노사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셨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테니까 저를 믿고 농성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로 그 날짜로 해산을 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잘 해결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잘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안홍준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세 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입니다.

안홍준 위원님 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안홍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2일날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에 관해서 3분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사실은 노동부장관께 하는 것이 어떨까 했습니다마는 제가 환노위에 있으면서 해당 장관께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께 제가 질의

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도 사실은 대정부질문을 그런 내용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NGO 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총과는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 심사하면서 사실은 제 지역 사무실이 유일하게 민주노총으로부터 점거를 당하고 한 일주일간 경찰이 경비를 서야 할 정도까지 해서 '왜 안 위원이 총대를 메느냐' 이런 식의 항의도 있었고 낙천운동까지 벌이겠다 할 정도까지 했는데 나름대로 저한테는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노조를 죽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저는 5년 이후에 살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망하면 노조전임자 평균 연봉이 5500 정도 되는데 4만 3000명의 직원들이 그 좋은 직장을 잃는다 생각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노조도 도와주는 것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제가 악역을, 소위원장이신 우리당 간사님도 있지만 세종길 위원님이나 배일도 위원님 또 여당 쪽의 조성래 위원님 같은 분이 마지막에 사실은 제 쪽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덕택에 그게…… 경쟁력을 위해서 마무리가 그런 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난 1월 현대자동차 성과급 관계 파업 관계는 국민들도 상당히 현대자동차 쪽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또 장관께서도 불법파업은 엄벌하겠다는 회견까지 하셨고 해서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국민의 여망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양보를 한 데 대해서 일선에서는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자체의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 실망스러운 후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홍준 위원** 장관께서 1월 15일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 성과급 문제는 노동쟁의의 대상도 아

니고 특히 이번 파업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고 하셨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홍준 위원**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야 병합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에?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검찰에서 당연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검찰에 병합을 요청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는 불법파업이라고 말만 했고, 사실은 반값만 현재까지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근로감독관께서…… 부산지방청장님 오셨지요?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예.

**○안홍준 위원** 조 청장님, 장관께서 조사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파업에 대해서 검찰에서 병합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알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이렇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는 저는 불법파업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도 크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홍준 위원** 왜 이렇게 불법파업이 현대자동차같이 1994년만 빼고 20년 동안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안홍준 위원** 간단하게만……

**○노동부장관 이상수** 결국 우리 한국의 노사문화의 한계이고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안홍준 위원**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왔더라면 우리 노사문화는 한 단계 성숙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최근에 상당히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강조돼서 노사문화가 상당히 협력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준 위원** 한 번 더 반복을 해 보면 현대자동차는 노조전임자 수가 공식·비공식 214명입니

다. 거기다가 대의원 수가 한 450여 명 됩니다. 대의원도 정상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평균 5500을 하면 330억 원이 사실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에 94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파업을 해 왔고,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94년에 63일 파업을 하고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100% 무분규라 할 수 없지만 현대중공업은 94년 이후 현재까지 무분규입니다. 세계 제1의 조선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요타와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 도요타는 40년간 파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임금동결까지도 하고, 생산성은 1인당 매출액이 현대차가 도요타의 34%고 1인당 영업이익이 32.2%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을 보면 하이브리드카를 상세히 설명하면…… 저는 도요타 본사를 방문하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심지어 렉서스 430이 풀옵션하면 8000만 원 됩니다, 하이브리드카가. 그리고 출하까지도 나옵니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형차 베르나의 생산가가 6540만 원입니다. 아마 시판가를 하면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도요타의 소형차 프리우스입니까, 2300만 원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노사분규를 계속 해오고 한다면 저는 이 회사가 5년 후에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벌써 영업이익이 3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성과급 문제, 파업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판매고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할 정도로.

그러나 그러고도 왜 현대자동차가 여태까지 살아왔느냐? 이것은 생산가 인상 부분을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전가했습니다. 1월 1일입니까, 1년에 20억 30억 정도 규모의 자동차부품을 하는 협력업체인데 목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맞추지를 못하면 한계기업, 협력업체는 더 나운데 하나 더 나온 하청업체는 한계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상승분을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전가했고 차 값이 매년 7, 8% 이상 인상됐습니다. 물론 기술력이 발전된 것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전가했어요.

이렇게 해서 회사가 이익을 남기고 노조에 성과급 주고 상여금 주고 이렇게 장치를 해 왔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5년 이상은 이 회사가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도요타 본사를 방문하고 가졌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질타를 했고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정리해 주십시오.

○**안홍준** 위원 예.

오늘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분이 박태주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 대표입니다. ‘현대차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무노동 무임금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

○**안홍준** 위원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 업무보고에 나올 것인데 ‘매년 임단협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하여 지급되는 격려금 등 일시금 지급 관행을 개선·지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지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저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검토했는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하고 회사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결단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어서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홍준** 위원 그 부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보면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항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즉 쟁의기간 중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노조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와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90조에 제44조제2항의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처벌규정까지 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이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처벌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처벌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상여금 등 격려금이나 성과급이나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임금 보전을 못 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지키게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 측을 도와주는 의미입

니다.

○**위원장 홍준표** 안홍준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고요. 이 조항은 10년 전에 제가 개정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왜 이 취지로 개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가 해 드릴 테니까, 10년 전에 했으니까, 그 질의를 마무리하십시오.

○**안홍준 위원** 총리께서도 지금 현재 반복되는 파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까지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 측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관련 처벌조항을 정부에서 발의하겠느냐고 하니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의원발의로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깐 존중한다고 총리께서 답변하셨거든요. 정부에서 발의하기 어려우면, 지금 제가 법 개정안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곧 발의할 건데, 이것이 사 측을 불리하게 하자는 법조항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사 측을 위한 조항입니다. 노동부에서 거기에는 찬동하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지금 안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은 10년 전에 노동법 1차 개정 때 격렬히 논쟁 되었던 조항입니다.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목적으로 파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 추가된 조항이고, 그러면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관철하려면 지급을 안 해야 하는데 사용주가 지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자연채무로 했습니다. 사용주는 지급의무가 없으나 지급을 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자연채무 형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10년 전에도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 정리는 여야 만장일치로 자연채무라는 법률적 형태를 취해서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그 당시에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에서 지켜 주면 좋은 것이고 그러나 기업은 의무는 없지만 지급을 하면 반환청구는 할 수 없는 자연채무 형태로 하자는 것이 그 당시에 노나 사나 여나 야나 전부 합의된 의견이었습니다. 장관님보다 제가 직접 이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제가 대신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외국동포 방문취업제가 3월 4일로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다 장기간 체류하고 직업 간 이전이 용이하게 되고 또 인원이 급격히 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서비스 업종의 인력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 이분들이 보다 평이하고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국내 근로자들하고 경쟁되는 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금년에 한 6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3만 정도는 친족이 있어서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들로 보고, 나머지 한 3만 정도는 쿼터제로 제한을 가해서 한 6만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6만 정도가 온다면 기존의 특례자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고용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고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고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파출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용이 되면 파출부시장에 있는 국내 인력들과 경쟁관계에 있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재외동포들은 썩 임금으로 더 전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6만 명 정도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동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일단 비자를 받고 오면 사업장을 바꾸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일단은 하여튼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업종의 범위도 약간 늘렸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행정지도를 펴나갈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초기에 행정지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잡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조짐이 이미 있거든요. 그것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구요.

비정규직 보호 3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단체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지금 노동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주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차별 시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노사정이 다 참여해서 함께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차별시정도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00인 이상, 내년에는 그 이하로……

○**제종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임금협상 등에서 차별을 요구했을 경우 공공기관일 경우는 노동부에서 직접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말씀인가요?

○**제종길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는……

○**제종길 위원** 현재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실 계획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가능하면 차별을 없애도록 지도하는 부분 말씀인가요?

○**제종길 위원** 예.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난번에 입법이 된 다음에 기업의 고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의 경우는 고용의 경직성을 받아들이면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고용 안정을 시켜 주면서 임금의 유연성을 얻어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경우는 비정규직이 좀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을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없고 차라리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자칫하면 외주와 도급으로 고용형태를 많이 바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계도도 하고 기업이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는 품질경쟁을 하라고 얘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을 하셨거든요. 아까 장관님께서 노동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매듭지었던 것을 업적

으로 얘기하셨는데, 아마 비정규직 보호 3법을 통과시킨 것도 하나의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매끄럽게 안착되도록,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본래 보호 3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 위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노동부와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부터 일어난다면 노동부가 다른 부서나 또 민간기업을 계도하고 지도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도 비정규직 입법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법취지를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의 노사 담당자들을 불러서 입법취지도 설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임금체계도 바꾸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초기단계에 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대차 노조사건과 관련해서 집단이기주의다 또 사 측을 전근대적인 노무관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피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데올로기 수준의 비난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지도를 강화하거나 또 법 집행을 강화해서 강경대응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편법탈법 불법만 더 난무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의 도요다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파이프 웨이(five way),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왜 그랬느냐 해 가지고 다섯 가지 이유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래요.

지난날 군사독재 시절에 거리에 나가서 돌맹이 던지면 불법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던졌습니다. 왜 던졌느냐, 그 자체가 잘못이니까요. 그런

데 독재정권이 경제적인 문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돌맹이를 던졌어요. 왜, 민주화와 자유가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것처럼 오늘날 어떤 조치를 취해도 지금 직업이 없는 실질적 실업자가, 소득이 3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 400만 명이 넘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이 30만 원 이하여서 국가에서 주는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만 해도 142만 명이 넘습니다. 차상위계층, 100만 원 미만 소득자까지 합치면 1500만 명 중 400만 명이 넘어요. 거기한 300만 명은 먹고살 만합니다. 잘 나가요. 양극화 20 대 80이 아주 극렬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그대로 놔둔 채로 강경대응한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후에는 희망을 못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원인을 찾아내야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이 틀렸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배일도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얘기하니까요. 그 주장이 틀렸느냐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말씀드리는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비정규직을 임금이 싸다,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서 고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배일도 위원** 비정규직이 ‘나, 비정규직 하기 싫어’ 하는 그 주장이 틀렸느냐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사람도 계시겠지요. 고용의 형태가 바뀌고 기술도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 사람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 비정규직 해결해 달라고 문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많은, 약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정규직을 없애면 기업이 망한다는 기업주의 주장들은 틀린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차별해소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배일도 위원** 아니, 기업주의 주장이 틀렸느냐

고요? 그것도 맞다니까요. 비정규직을 못 쓰면 기업이 가격경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맞다니까요. 그러면 2개가 다 맞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문제를 일도양단 식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나 차별 해소해 주세요’ 하는 그 주장도 맞습니다. 기업주들이 ‘인건비 때문에 도저히 국내에서 사업 못 하겠다’는 주장도 맞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원인이 다른 데 있잖아요.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 경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안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돈 받으면 어디다 씁니까? 그 돈을 자녀 교육비 내고 주택 사는 데 쓰고 의료비로 씁니다. 그리고 기업주들은 각종 4대 보험 다 냅니다. 그게 전부 합치면 97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보장제도로 나가면 106조 들어갑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료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인건비 낮아집니다. 4대 보험 기업이 낼 필요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아니고 표피적인 문제를 두고 계속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제도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낮은 일자리일 수밖에 없고 쓸만한 일자리 아닙니다. 그 돈 받아 가지고 사회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기업을 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기만 하면 이 나라의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



만, 배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데로 간다, 목적지를 다른 데로 간다는 점을, 오늘 처음 업무보고 하는 것이니까 좀 생각하셔서 이후에 새로운 조치를 하시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얘기도 이 땅의 국민한테 희망을 못 주고 어떤 정치 세력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배일도 위원님 의견도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사회복지제도를 106조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배일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106조를 거두려면 한나라당 반대부터 극복해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 현대차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마침 오늘 한겨레신문에 박태주 박사도 ‘현대차 이대로는 미래 없다’ 이렇게 쓰고 그 뒷말이 ‘노사 빅딜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공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빅딜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게 그것인데, 사 측에다가는 비정규직을 고용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 양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것을 해 준다면 노동조합은 배치전환까지 못 하게 하는 과도한 단협을 풀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양쪽 다 못 한다는 거였어요. 그전 해에도 그 얘기를 했지요. 결국 박태주 박사도 노사 빅딜을 통해서 사 측은 고용을 보장해 주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협조해 주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진단이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지요. 이번의 문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정말,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김동진 부회장이 전 노조위원장한테 돈 준 사건 말입니다. 정말 현대자동차는 한 시대의, 87년 8, 9월 노동

자 대투쟁의 맨 선봉에 있었던 회사고, 민주화운동을 한 축에서 완성시켰던 부분이고요. 전태일 열사가 노동3권 보장하라고, 근로기준법 지켜라 이것에서부터 그 어려운 노동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그리고 노동조건의 극복이라고 하는 게 민주화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의,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구속됐지요. 그런데 김동진 부회장은 또 구속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것이 뭘까 이것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려가서도 여기 계신 환노위원들이 깜짝 놀랄 만큼 노동조합을 비판했습니다. 전임자 문제, 600명 아니냐, 회사 측에서 저한테 600명이라고 갖다 줬는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600명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노조한테 물어보니까 더더욱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치전환까지 못 하게 하는 단협에 대해서 양보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귀족노조지요. 기득권 노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테라칸 라인을 줄이는데 정규직 노조 대의원들이 비정규직만 자르는 노사합의를 하더군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희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족노조고 기득권 노조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역학관계로 보면 뒤에서 돈 주고받은 사람이 있는데 노조 위원장은 구속되고 돈 준 회사 부회장은 구속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느껴지는 사회적 박탈감이 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원칙과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노사가 어느 쪽이 손해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대타협을 잘 끌어가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노동부만이 할 일은 아니고 참여정부 전반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상수 장관님이야 나중에 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초기에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장관께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었을 때 하지 못함으로써 해서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쨌든 남아 있는 기간이라도, 결국 현대차 문

제의 해결은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눌러서…… 원칙을 지켜야 되지요. 탈법하는 사람들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면 주체들이 대타협의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필요를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티기 하고 있는 기득권 지키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족이라고 욕먹어도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정말 공멸하겠단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고, 참여정부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의 전통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까.

고용정책, 이게 워낙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부처에서 고용정책에 대해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감사원에서 사회보험에 대해서 평가한 게 워낙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에 유리한 평가를 한 게 있어서 제가 그 감사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것을 노동부에 드렸는데 노동부에서 잘 반영을 안 해주셔서 지난번 예결위원회할 때 감사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고용정책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부가 이제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내놓는, 공신력이 있는 다른 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들에 대해서 잘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증하지 않으면 영 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통계청에서 쉬는 남성 100만 명 시대를 통계 숫자로 발표했는데 그 며칠 후에 또 뭘 했느냐 하면 ‘괜찮은 일자리 여성 대거 진출’이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 두 기사를 합치니까 여성들이 괜찮은 일자리에 대거 진출함으로써 해서 남성들이 밀린다는 것같이 느껴지게 이렇게 기사가 연속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는 남자 100만 명에 빠져 있는 것은 설 수밖에 없는 여성 660만 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명하지 않고 남성 100만 명 강조하고 그다음에 바로 괜찮은 일자리에 여성 대거 진출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잘못될 소지가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보면, 아주 좋은 일자리를 보면 의회 의원, 고위 임원, 관리자 이게 통계청 분류에서 57만 명인데 남성이 52만 명이고 여성이 4만입니다. 이만큼밖에 진출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이 될 수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잘 조치를 해주셔야 고용정책을 제대로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전경련에서도 기업에게 고용문제에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내놓은 것은 충원하려는 직종에 적합한 경험자,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게 49%입니다. 그런데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뭐냐 그랬더니 투자·입지 등 규제완화 및 활성화 지원 이겁니다. 아니, 잘 훈련을 안 시켜서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고용을 못 하는데 갑자기 투자 규제로 가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인데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틀려서 여기 통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하고 서면으로 질의했더니 대부분 다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각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한 목소리들 다 하나씩, 자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하고 맞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이런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으신 제안이고요, 그 비슷한 논의를 현재 노동부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실업급여의 지급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을 언론은 마치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다른 각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가지고 오히려 지급률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우

리 노동부나 관계기관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자 이렇게 시스템 화해 가지고 문제를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노동부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가능할 겁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동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단병호 위원님, 맹형규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안홍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취지에 부합되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시어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3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고견들은 노동부가 향후 정책개발과 정책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장을 정돈하기 위해서 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준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 · 주승용 · 박상돈 · 김명자 · 김형주 · 조정식 · 이목희 · 김영주 · 김태년 · 제종길 · 한광원 · 김효석 · 최철국 · 윤두환 · 김혁규 · 김선미 · 임종석 의원 발의)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맹형규 · 이원복 · 김명주 · 이성구 · 신상진 · 이해봉 · 이인기 · 정성호 · 김태환 ·곽성문 · 이경재 · 이성권 · 고조흥 · 배일도 · 김정권 의원 발의)

**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김정훈 · 유승민 · 이성권 · 최경환 · 권철현 · 엄호성 · 김양수 · 이명규 · 박형준 의원 발의)

**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 · 최성 · 강창일 · 김춘진 · 우제항 · 강길부 · 양형일 · 강혜숙 · 장향숙 · 윤원호 · 김태년 의원 발의)

**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 · 강기정 · 김영주 · 김재홍 · 김종률 · 김태년 · 김희정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서갑원 · 안병엽 · 염동연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이광철 · 이성권 · 이원영 · 이인영 · 장복심 · 정동채 · 정성호 · 조정식 의원 발의)

**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 · 김정훈 · 유승민 · 이성권 · 최경환 · 권철현 · 김양수 · 이명규 · 박형준 · 조성래 의원 발의)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 · 강기정 · 김영주 · 김재홍 · 김종률 · 김정권 · 김태년 · 김희정 · 문학진 · 박기춘 · 박명광 · 서갑원 · 심재덕 · 안병엽 · 염동연 · 우원식 · 우제창 · 유기홍 · 이광철 · 이성권 · 이영호 · 이원영 · 이인영 · 장복심 · 정동채 · 조정식 의원 발의)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 · 조성래 · 이성권 · 박세환 · 이은영 · 이계진 · 황우여 · 이인기 · 권철현 · 박찬숙 의원 발의)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제5항 장복심 의원, 맹형규 의원, 한선교 의원, 조성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김형주 의원,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김형주 의원, 김애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각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산업보건의의 자격 및 직무내용을 의료법에 의한 의사 중 산업의학 전문의·예방의학전문의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산업보건의에게는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 및 응급조치 능력을 특히 필요로 한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전문화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보건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의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측정결과가 부실하거나 왜곡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작업환경 측정의 신뢰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작업환경측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업주가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정확성·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측정의 신뢰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용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의 기업이 용자를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해 다시 용자를 받고 또다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려는 이 법률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협력업체 사업주 간 상호협력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법 제18조 및 제29조에서 명시한 도급 사업주의 의무규정과 사실상 중복이 되는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규정할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자칫 각 협력업체 사업주 각자에게 분산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도 수급 사업주에게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내에서 13개월 이내로 1개월 더 보장해 주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기간 중 1개월 이상은 육아휴직 신청자격이 있는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긴박한 사정 등으로 남성 근로자를 육아휴직시킬 수 없을 때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관서에서 업무의 긴박한 사정 등으로 남성 근로자를 육아휴직시킬 수 없는 사업장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선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업주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사회적 보육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직장보육시설 등 보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남성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보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육아휴직기간을 12개월에서 13개월로 연장하여 남성이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1개월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로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육아휴직 최초 1개월간에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경우

1270억 원~4065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자들의 급여액에 비례해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4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제도 도입 시 경제여건,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그 급여액이 기대 수준에 못 미쳐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실적인 급여를 보장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재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맹형규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신뢰성 평가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는 찬성하는데 안전공단의 위탁은 반대하고 감독관이 실시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아마 정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은 유해인자 190종을 다루고 있는 전국의 3만여 개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전국 노동관서 보건담당 감독관은 불과 58명에 불과하거든요. 또 신뢰성 평가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작업환경 측정은 유해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산업안전기관의 목적에도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 주체의 문제인데 이 과태료 부과는 허위사실 등 과실이 있을 경우 공단이 노동부에 보고해서 절차만 거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에 저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다른 분은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0. **賃金債權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성권·신상진·권철현·이명규·김정훈·유승민·최경환·송영선·엄호성 의원 발의)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성권·박형준·신상진·권철현·이명규·김정훈·유승민·최경환·엄호성 의원 발의)

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곽성문·엄호성·이인제·박세환·이상배·고홍길·주호영·김무성·정종복·김용갑·김석준·정희수·심재덕·이한구 의원 발의)

1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용규 의원 대표발의)(최용규·제종길·김영주·우원식·김종률·이강래·조성래·강봉균·이영호·박기춘·주승용·조일현·양승조·강기정·이상민·오영식·선병렬·노웅래·최성·김현미·정성호·김선미·김춘진·오제세·박명광·박영선·정덕구·문병호·우제창·정청래·윤호중·김성곤·신기남·조배숙·장향숙·김태홍·장복심·김낙순·우윤근·이은영·민병두·이기우·한병도·정상선·김교홍·이미경·조정식·김형주·문학진·장영달·윤원호·홍창선·전병현·서혜석·유재건·이상경·송영길 의원 발의)

14.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명규·김정훈·엄호성·김충환·이성권·정두언·유승민·김양수·김영선 의원 발의)

15.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조성래 의원 대표발의)(조성래·최성·강창일·김춘진·우제항·강길부·단병호·양형일·강혜숙·장향숙·윤원호·김태년 의원 발의)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 의원 대표발의)(김선미·김동철·이종걸·조경

태·배기선·정성호·박영선·이성권·김희정·노용래·김재윤 의원 발의)

**17. 高齡者雇傭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 의원 대표발의)(김양수·이성권·김희정·박형준·권철현·남경필·김명주·이주호·한선교·최구식 의원 발의)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박재완·신상진·임태희·유기준·나경원·이주호·김성조·문희·이종구·심재철 의원 발의)

(17시13분)

○**위원장 홍준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한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최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조성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각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체당금 지급기한이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체당금 지급을 위하여는 도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정 절차가 체당금 지급의 전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확인 절차이므로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체당금 지급 관련 민원 서류 처리를 예외 없이 60일로 정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 단축의 효과가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도산 등 사실인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선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지원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일정기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증대를 위한 지원 비용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부정수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의 경우 당해 수급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그 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3년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 모집기관에 위탁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그동안 사업주 위주의 외국인력 공급체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외국인력정책수립·집행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는 산업연수제의 통합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장 밖 근로의 생산고에 따른 임

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예 중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사전에 확정이 어려운 가변적인 임금으로서 택시 운전근로자의 총 수입액이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방안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업임금의 범위를 고정급으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공립학교의 경우 사용자 측 교섭 및 체결권한을 가진 당사자로서 시·도 교육감을 제외하려는 것이나 교원노조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설립하고 있고,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으로 시·도 교육감을 교섭에서 배제할 경우 권한을 가진 사용자와 교섭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성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원청기업의 용역·계약해지행위나 고용승계 거부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의한 단체교섭·단체행동권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그 주체도 사용자이나, 원청기업은 도급관계나 용역관계에서 직접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해석을 볼 때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들 기업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는 것은 기존 부당노동행위규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인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에게도 유급의 수유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생활에서 유아를 양육하는데 모뿐만 아니라 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실제로 육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남성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제73조의 수유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꼭 모유수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 수유시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성근로자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고령자를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이나 재고용장려금 등과 마찬가지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절차나 지원내용이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시 이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 제46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이 개정안과는 별도로 지난 2006년 11월 정부는 국세청장 산하에 새로운 징수공단을 설립하여 통합 징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각 공단 직원의 신분 등 고용안정을 피할 수 있고 통합징수의 추진에 용이한 면이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이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 위원 한선교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부정수급 제재도 2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내용은 과다한 제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5배 추징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구직급여나 산재보험의 급여자는 실직자, 재해자 등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금전적 여력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배액 정수는 적정하다고 보지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이들과 사회적 처지가 아주 다르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부정수급액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5배 변상의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요. 다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규 장애인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1년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교원노조와 관련해서—이게 전교조지요—정부의견은 한선교 의원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전문위원도 정부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현재 전교조의 활동을 비롯한 교육계의 여러 상황에 대하여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와 집단행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교원노조의 인천광역시 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요구들이 즐비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것은 협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법령과 조례가 충돌하면 그 조례가 당연히 폐기되는 건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조례라고 하면 조례를 선택한다 이것은 도대체 협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이런 무리한 것을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은 학습권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 제6조제4항에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선교 의원의 개정안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협약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취지에 적극 찬동을 하는 겁니다.

학교의 운영주체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고 현행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수렴이라는 절차로서 보고과정의 절차를 두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정부나 전문위원의 반대 의견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교원노조법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체결되는 해당 내용을 학교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 단체협약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더라도 그 내용의 신설·변경·폐지 등의 여지가 없어서 보고의 실익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노조 노사관계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서 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4항 및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 이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시도별로 노조가 교육청하고 교섭할 때 각 학교별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일부 수긍이 가는데요. 그러나 각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또 시는 시에 학운위 연합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거르는 것이 바로 제6조4항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 같은 것은 이미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보도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절차를…… 이게 중간에 무슨 영향을 받게 된다, 협약내용에 뭘 준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는데 미리 의견을 듣는 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둬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 말씀을 한번 깊이 고려해 보고 소위 때 저희들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심사소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9. 賃金債權保障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388)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정부 제출)
23. 社內勤勞福祉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963)
26.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7.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塵肺의豫防과塵肺勤勞者의보호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29분)

○위원장 **홍준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내지 제30항 정부가 각각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1월 16일 제출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월 15일 제출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사회보험 징수체계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12개 법률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보험 징수체계 개편과 관련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징수하던 4대 사회보험료를 국세청 산하에 신설되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에서 일괄하여 징수키로 하고 관련 법률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부도 징수통합 관련 4개 법률의 개정안과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청장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통일된 기준인 소득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보험료율 등 정책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임금채권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징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 개정의 취지는 재량행위 투명화 법령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내복지기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내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의 영구보관 규정을 사내복지기금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보관기간도 10년으로 단축하여 회의록 보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의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기금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현행 1년인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확대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잦은 기금변경등기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능력인정 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기술 출현, 숙련주기 단축 등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민간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위탁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을 위해서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자격증 대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던 것

을 앞으로는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고용보험사업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법령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 소관으로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기준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대해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개 법률은 모두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개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본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된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3개의 개정법안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법안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적용·징수 관련 규정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보험제도 고유의 정책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각각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입니다.

4대 보험의 적용 및 부과·징수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에 맞추어 이 보험료징수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이 법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을 공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대표권을 일반 법인과 같이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체의 특성에 맞게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은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자격취득 후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실시 기관·단체, 위탁 실시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의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과 국가기술자격 관리·활용의 유기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국가기술자격의 통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자격 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사업에 관하여 북한 당국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건립 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통일부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글화법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5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문장 용어의 어려움 또 어문규범에 맞지 않은 문장구조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한 제14~19조까지 여러 조문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1개 조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2006년 12월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 법안의 제출 당시 공포가 되지 않아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일부분이 있으므로 법안 심사 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재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19항, 20항, 21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이 세 가지 사회보험을 통합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법안을 내신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징수 절차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경재 위원 징수를 단일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비용절감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감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될 텐데 일부 직원들은 새로 생기는 기관으로 가고 일부는 남아서 다른 고유한 업무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잉여인력이 있다면 감원을 하거나 또는 저희들은 총액임금제가 적용된다고 봐서 그것을

급여서비스를 올리는 데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효율화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 지난번에 인력공단 또 기능대학 통폐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거든요. 그때 여하튼 통합을 하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고유의 업무는 줄어들지만 다른 데 또 일을 확장하는 게 많을 테니까 그 인원들이 감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찬성 발언을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감사합니다.

○**이경재 위원** 같은 뜻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그다음에 25항 고용보험법, 이런 내용이 나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슬그머니 어떻게 들어온 거 같아요.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사업에 관하여 북한 당국·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든다 하는 것인데 노동부가 직접 남북 교류사업에 뛰어드는 내용인데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슬그머니 끼어든 거 같아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요.

○**위원장 홍준표** 지난 국정감사 때 이게 지적됐던 사항일 겁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이경재 위원** 그런데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개성도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그쪽이 북한의 통치권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내법에 남북교류법 말고 국내의 부서가 바로 거기에 직접 관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선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것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논평……

○**위원장 홍준표** 그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었고 그때 장관님 답변이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답변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남북교류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교류를 할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때 약간 기금을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남북교류는 아니고요,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류가 있는 경우에만 좀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인데……

○**이경재 위원** 그런데 이거 읽어 보면 ‘개정안은 고용보험사업에 관하여 북한 당국과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그러면 고용기금에서도 남북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저희들은 일반적인 협력사업까지 문제 삼은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소위에서 논의할 때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 가지고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서 전문위원이 참 객관적으로, 정부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지를 않고 여기 제대로 짚었다고 보는데, ‘고용보험기금은 제68조제5호에서 고용보험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류협력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여기 문장은 완곡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현재 개도국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 베트남 등에 고용보험기금으로 국제교류나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더 검토해서 소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인력공단 직원이 개성공단에 파견 나갔다가 왔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갔다 왔습니다.

○**이경재 위원** 명문 규정이 없어도 필요한 교류협력 할 때는 가서 지도도 해 주고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기본법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도 나도 남북교류 코드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류협력사업이 있으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고 이 조항은 삭제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해년 첫 국회입니다. 올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이 죽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벽두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계 선배님, 안홍준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등은 법과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정진섭 위원님은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사회 대타협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세 번째 우원식 위원님은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 대타협이다”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일랜드라는 나라를 보면 87년도 이전에는 유럽의 변방에 있었던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사회 대타협을 이루면서, 20년 동안 다섯 번에 걸쳐 사회 대타협을 이루면서 무과업인 나라가 되었어요. 파업이 없어요. 파업이 없는 반면에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기업은 이익이 나오면 일자리 창출을 했고, 정부는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감세를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그렇게 노력한 결과 지금 아일랜드는 4만 1000달러의 소득에 달할 정도로 유럽 최고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사회 대타협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견 중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 대타협을 강조했고, 올해 노동정책의 방향도 저는 사회 대타협 방향으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사실 민주노총이 탈퇴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좀 강화하고 확대개편하고 이렇게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여야 정당도 참여하고 정부도 참여하고 노총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제 세력들이 참여해서 올해 노동정책의 방향이 노사정위원회를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확대개편해 가지고 사회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노사정위원회 확대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노사정위원장에게 지시를 해서…… 아일랜드나 다른 선진국의 사회 대타협 모델이 죽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해서 한국사회도 선진화로 가기 위해 이런 사회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금년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장관님이 노사정위원회에 좀 지시해 주실 것을, 그리고 지시하고 난 뒤에 노사정위원회로 하여금 저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주실 것을…… 사회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법적 뒷받침이나 그런 것이 다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법적 뒷받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각별하신 지적과 또 한편 제안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금년 노사정정책을 펴는 데 많은 참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어제 회의에서 2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환경부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9건의 노동부 관련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잡하고 바쁘시더라도 2월 26일·27일에 개최되는 소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셔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률안들은 심도 있게 심사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남아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정진섭 위원님, 이경계 위원님, 배일도 위원님, 안홍준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법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단 병 호	맹 형 규	배 일 도	신 기 남
신 상 진	안 홍 준	우 원 식	이 강 래
이 경 계	정 진 섭	제 종 길	한 선 교

홍준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전문위원	윤진훈

○정부측 참석자

노동부		
장관	이상수	
차관	김성중	
정책홍보관리본부		
본부장	노민기	
홍보관리관	허원용	
재정기획관	이우룡	
고용정책본부		
본부장	정종수	
고용정책심의관	이기권	
노동협업관리직무대리	권영순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이채필	
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노사정책국장	송봉근	
근로기준국장	장의성	
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국제협력국장직무대리	이성기	
감사관직무대리	김성광	
총무과장	박화진	
공공기관비정규직 대책실무추진단장	김윤배	
노사정위원장	조성준	
중앙노동위원장	김유성	
서울지방노동청장	조정호	
부산지방노동청장	조주현	
대구지방노동청장	정철균	
경인지방노동청장	박중철	
광주지방노동청장	박승태	
대전지방노동청장	김맹룡	

○기타 참석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
한국노동교육원장	선한승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
산재관리의료원이사장	최병훈
학교법인기능대학 이사장	박용웅
한국기술교육 대학교총장	정병석
한국고용정보원장	권재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영전략본부장	김동희